

기본연구 2008-10

# 일본 지역재생사업의 실태 및 특징

유학열



# 발 간 사

우리나라와 지형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類似한 일본의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침체, 지역사회가 쇠퇴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방중소도시와 거의 同一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중소도시에서는 그 지역의 實情에 맞는 정주 환경개선, 지역산업 부흥, 새로운 고용 창출 등 地域再生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들을 구상,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3년 10월 지역재생본부가 설치된 후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각 지역주체들의 긴밀한 협동에 의해 생활환경정비, 지역고용기회 창출 등 다양한 지역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일본의 지방중소도시재생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재생전략을 立案한 실행 체계로서 새로운 전 각료로부터 지역활성화통합본부와 그 아래의 지역활성화통합사무국을 설치하여 지역재생에 대한 다양한 시책에 대해 一元的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방중소도시재생을 위한 全般的인 政策 方向 및 制度, 지원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先進 사례지의 심층사례분석을 통해 일본지방중소도시 재생사업추진과정, 추진주체, 성공요인에 대해서도 파악,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낸 결과에 의해 일본 지역재생사업의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재생에 適用가능성을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適用에 필요한 前提條件 및 與件 등을 고찰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 재생전략 및 방향 설정 수립에 있어 基礎자료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諮問과 協助를 아끼지 않은 관계 전문가와 일본 현지 담당공무원에게 깊은 感謝의 뜻을 표한다. 모쪼록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사업에 대한 施策構想 및 후속연구에 有益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8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



# 연구요약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방중소도시의 쇠퇴는 주변지역과 배후지역, 농촌지역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쳐 지방의 활력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에 장애가 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대시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중소도시의 거주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상업기능의 쇠퇴, 중심시가 지 空洞化 등이 급속히 진행됨과 동시에 종래의 地緣적 커뮤니티(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시재생, 도시재개발사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편중 되어 진행돼 왔으나, 최근에 들어 지역재생 및 지역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점점 그 관심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의 지방중소도시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 결과 학교, 병원 등 생활기초시설이 열악하게 되어 이 때문에 다시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지방중소도시에서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생활환경유지 및 산업활성화 등 지역재생(지역활성화)에 힘을 쏟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3년 10월 지역재생본부가 설치된 후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각 지역 주체들의 협동체제에 의해 생활환경정비, 지역고용기회 창출 등 다양한 지역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지방중소도시재생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재생전략을 立案한 실행체계로서 內閣部 내에 지역활성화통합본부와 그 아래의 지역활성화통합사무국을 설치하여 지역과제에 대한 다양한 시책에 대해서 一元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본의 지방중소도시재생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제도, 지원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선진 사례지의 심층사례분석을 통해 일본지방중소도시 재생사업추진과정, 추진주체, 지역주민참여형태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 재생을 위한 基本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4부문(제2장~제5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우선 일본의 내각부 내 지역활성화통합회합에 설치돼 있으며 지역활성화사업을 총괄하는 4본부에 대해서 비교, 검토하였으며, 그 가운데 지방소도시재생과 관련이 깊은 지역재생사업의 추진배경, 기본이념, 지역재생의 5원칙, 지역재생의 목표 등 지역재생사업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재생사업의 추진주체와 사업의 추진절차 즉 사업의 추진 체계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파악과 더불어 사업의 목적과 지원책을 기준으로 재생사업을 유형화하여 분류 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역재생사업의 지원체제를 파악,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선 지역재생사업지원의 3대 핵심 내용 즉 ① 지역의 인재 육성 및 인재 네트워크 지원, ② 보조금개혁 등에 의한 지역의 자주재량성 확대, ③ 민간의 노하우, 자금 등의 활용 촉진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지역재생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7가지 프로그램인 지역고용재생프로그램, 지역紐帶재생 프로그램, 지역제도전진프로그램, 지역교류·連帶추진프로그램, 지역산업활성화재생프로그램, 지역 지식거점재생프로그램, 지역온난화대책추진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일본 지방소도시재생의 추진배경, 추진주체, 추진과정, 성과 등을 보다 深層的으로 파악, 분석하기 위해 오이타현 분고다카타시(大分縣豊後高田市), 구마모토현 아라오시(熊本縣荒尾市)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일본 지방소도시 재생사업의 實體를 實證하였으며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도 도출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러한 상기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소도시 재생을 위한 基本方向을 제시하였다.

## 3. 결론 및 정책 제언

연구 결과, 일본 지방소도시에 있어서의 지역재생사업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특징으로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사업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방소도시의 지역재생계획서를 토대로 사업목적별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약 53%가 생활환경, 자연환경 등 생활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특징은 지역재생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는 점이다. 7대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53개 세부 지원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세 번째 특징으로 지역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총괄 기구(지역재생사업추진본부)가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 지역재생사업이 지역주민, 행정기관, 기업, 전문가 등 지역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차 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2
1. 선행연구의 정리 .....	2
2. 선행연구의 한계 .....	3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흐름 .....	3
1. 연구의 내용 .....	3
2. 연구의 흐름 .....	4
제4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5
제5절 용어정리 .....	6
제2장 일본의 지방소도시지역의 재생정책 및 추진현황 .....	7
제1절 일본의 지역활성화 4본부의 비교 .....	7
제2절 지역재생사업의 추진 배경 .....	9
제3절 지역재생사업의 개요 .....	10
1. 지역재생의 기본이념 및 정의 .....	10
2. 지역재생의 원칙 .....	11
3. 지역재생의 의의 및 목표 .....	12
4. 지역재생사업의 추진기관 및 근거법 .....	12
제4절 지역재생사업의 추진 체계 .....	13
1. 추진 주체 .....	13
2. 지역재생계획의 인정 절차 .....	13
제5절 지역재생사업의 추진 현황 .....	14
1. 추진 현황 개요 .....	14
2. 재생사업의 유형별 특징 .....	16
제3장 일본의 지방소도시 재생을 위한 지원 체제 .....	18
제1절 지역재생사업지원의 3대 핵심 .....	18
1. 지역의 인재 육성 및 인재 네트워크 지원 .....	18
2. 보조금개혁 등에 의한 지역의 자주재량권 확대 .....	18
3. 민간의 노하우, 자금 등의 활용 촉진 .....	21

<b>제2절 지역재생 지원프로그램의 내용 및 특징</b> .....	<b>21</b>
1. 지역고용재생프로그램 .....	24
2. 지역유대재생프로그램 .....	26
3. 지역의 제도전(재취업)지원프로그램 .....	27
4. 지역교류·연대지원프로그램 .....	28
5. 지역산업활성화재생프로그램 .....	30
6. 지역지식거점재생프로그램 .....	32
7. 지역온난화대책추진프로그램 .....	34
<b>제4장 일본 지방소도시재생의 심층 사례분석</b> .....	<b>35</b>
<b>제1절 사례분석(1) 오이타현 분고다카타시</b> .....	<b>35</b>
1. 분고다카타시의 개요 .....	35
2. 재생사업의 추진 배경 및 경위 .....	36
3. 재생사업의 추진 목적 .....	37
4. 재생사업 내용 .....	38
5. 재생사업을 위한 지원책 .....	41
6. 지역재생사업의 성과 .....	41
7. 성공요인 및 시사점 .....	42
<b>제2절 사례분석(2) 구마모토현 아라오시</b> .....	<b>43</b>
1. 아라오시의 개요 .....	43
2. 재생사업의 추진 배경 및 경위 .....	43
3. 재생사업의 추진 목적 .....	43
4. 재생사업의 추진 내용 .....	44
5. 재생사업을 위한 지원책 .....	46
6. 성과 .....	47
7. 시사점 .....	47
<b>제3절 소결 - 일본의 지방소도시 재생사업의 특징</b> .....	<b>50</b>
1.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사업이 과반수 .....	50
2. 새로운 고용창출 및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의 활력 증진 .....	50
3. 지역재생을 위한 다양하고 폭 넓은 지원 프로그램 .....	50
4. 지역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총괄 기구 설치 .....	51
5. 지역주체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및 명확한 역할 분담 .....	51
<b>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b> .....	<b>52</b>
1. 결론 .....	52
2. 정책제언 .....	53
<b>&lt; 참고문헌 &gt;</b> .....	<b>55</b>
<b>&lt; 부    록 &gt;</b> .....	<b>57</b>

# 표 차례

<표1-1> 연구 방법 개요 .....	5
<표2-1> 일본의 지역활성화 4본부 비교 .....	8
<표2-2> 지역재생제도의 연혁 .....	10
<표2-3> 지역재생계획의 인정 현황 .....	15
<표3-1> 지역재생사업 지원프로그램 및 세부지원책 .....	22
<표4-1> 분고다카다시의 개요 .....	35
<표4-2> 분고다카다시의 지역재생 경위 .....	36
<표4-3> 아라오시의 개요 .....	43

## 그림차례

<그림1-1> 연구 흐름도 .....	4
<그림2-1> 지역재생계획의 인정 절차 .....	14
<그림2-2> 지역재생사업의 목적별 비율 .....	16
<그림2-3> 지역재생사업의 지원조치내용별 비율 .....	17
<그림3-1>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 .....	19
<그림3-2>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 배분 방식 .....	19
<그림3-3> 보조대상시설의 유효활용 절차 예 .....	20
<그림3-4> 지역고용창조추진사업의 개요 .....	24
<그림3-5> 시민활동단체등지원종합사업의 개요 .....	26
<그림3-6> 재도전지원기부금제도의 개요(직접형) .....	28
<그림3-8> 농촌커뮤니티재생·활성화지원사업의 개요 .....	29
<그림3-9> 지역기업입진촉진등보조사업의 개요 .....	31
<그림3-10> 지역재생인재창출거점형성프로그램의 개요 .....	32

## 사진차례

<사진4-1> 쇼와시대 風으로 간판 정비 .....	38
<사진4-2> 쇼와시대 생활상 전시 .....	38
<사진4-3> 쇼와시대의 상품 전시 .....	39
<사진4-3> 쇼와 로망장 .....	40
<사진4-4> 거리의 연구실 .....	44
<사진4-5> 커뮤니티테스트랑 .....	45
<사진4-6> 지역재생 프로젝트 상품 .....	46

# 제1장 서론

여기서는 연구배경, 연구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등 본 연구의 전체적 개요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의 국가발전은 지방도시의 競爭力과 成長에 달려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정도로 지방중소도시의 경쟁력 강화는 도시의 발전뿐 아니라 국토의 均衡發展이나 국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역대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수도권 인구의 집중 및 산업집중 억제에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정책들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시키는 데에 기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도시와 지방중소도시(농촌지역 포함)간의 발전의 격차가 더욱 深化된 것이 사실이다.

지방도시의 쇠퇴는 주변지역과 배후지역은 물론 도시지역을 위해 많은 公益的 역할을 하고 있는 농산촌지역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쳐 지방의 활력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에 장애가 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대시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소도시는 거주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상업기능의 쇠퇴, 중심시가지 空洞化 등이 급속히 진행됨과 동시에 종래의 地緣적 커뮤니티(地域共同體)가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동안의 도시재생, 도시재개발사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에 편중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 도시(지역)재생 및 지역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점점 그 관심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의 지방중소도시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지방중소도시에서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생활환경유지 및 산업활성화 등 지역재생(지역활성화)에 힘을 쏟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3년 10월 지역재생본부가 설치된 후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서도 각 지역주체들의 협동체제에 의해 생활환경정비, 지역고용기회 창출 등 다양한 지역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본의 지방소도시재생을 위한 全般的인 정책 방향 및 제도, 지원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선진 사례지의 심층사례분석을 통해 일본지방소도시 재생사업추진과정, 추진주체, 지역주민참여형태 등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소도시 재생을 위한 基本方向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窮極的인 意義는 일본의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소도시재생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前提條件 및 여건 등을 고찰하고자 함에 있으며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물은 우리나라 지방소도시 재생전략 및 방향 설정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1. 선행연구의 정리

#### 1) 일본 지방中核도시 중심시가지활성화에 관한 선행연구

- 일본의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 및 중심시가지활성화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징을 도출(박종철외, 2001)
- 일본의 지방중핵도시를 대상으로 중심시가지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측면과 관련주체(자치단체, TMO<sup>1)</sup>)들의 구조를 분석(윤상복, 2001)
- 일본의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의 개요 및 활성화사업의 실태 분석(임준홍외, 2006)

#### 2) 일본 大都市재생에 관한 선행연구

- 일본의 동경, 오사카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전략 및 실태 분석을 통해 대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박재욱, 2006, 정두용, 2005)
- 일본 지방 대도시(현청소재지)재생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사례조사를 통해 대도시재생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오재일외, 2005)
- 동경의 중심지인 마루노우치지구에 있어서의 도시재생프로젝트사업내용 및 성과, 문제점을 도출(이성창외, 2006)

---

1) TMO란 Town Management Organization의 약자로 지역만들기를 행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으로는 지역의 美化활동, 중심시가지 활성화활동 등을 들 수 있다.

### 3) 일본 지방중소도시재생에 관한 선행연구

- 일본의 지역재생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재생제도의 도입 배경, 기본방침, 운영시스템에 대한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일본의 지방재생전략의 도입배경, 기본이념 및 원칙 등 지방재생에 대해 개략적인 분석(김승희, 2008)
- 일본의 지방도시(나가하마시 : 長浜市)의 중심시가지활성화 사례를 들어 역사적 해석적 방법의 의해 활성화 전개과정과 성공요인을 분석(권오혁외, 2002)

## 2. 선행연구의 한계

앞서 살펴 본 선행연구의 限界点を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재생사업 (도시재생프로젝트)과 관련된 것들이며 지방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일부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찾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이 지방중핵도시(縣廳소재지)의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과 관련된 것들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지방소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려우며 일부 지방소도시의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을 사례를 들어 분석한 연구는 있으나 추진 체계, 제도 중심으로 다루어져 있어 구체적인 추진과정, 지역주체들의 역할, 사업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까지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셋째, 대부분의 사례연구가 문헌조사에 많은 부분을 의존한 관계로 현지조사를 통한 實證적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方法論적 脆弱性 및 결론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와 論理性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도 선행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흐름

###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内閣部 내의 지역활성화통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구조개특특별구역추진사업’,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 ‘지역재생사업’ 가운데 지방소도시재생과 관련이 깊은 ‘지역재생사업’에 限定하여 深層的으로 다루고자 한다.

연구 목적은 아래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지방소도시재생과 관련이 깊은 지역재생사업의 전체적인 개요 파악으로 추진배경, 추진목적, 추진주체, 추진시스템, 지원책, 추진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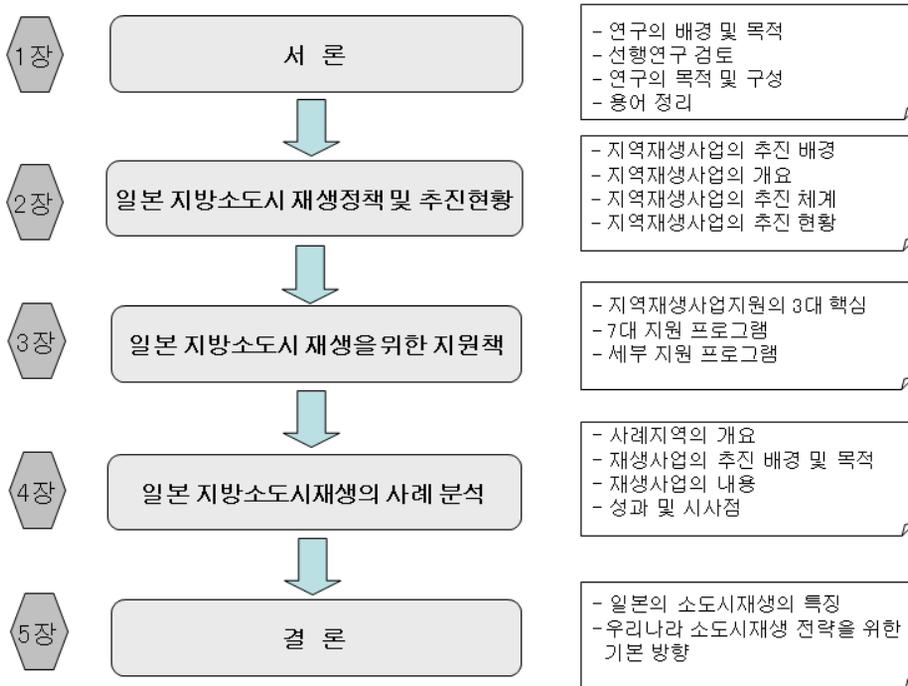
둘째는 지역재생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및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3장)

셋째는 내각부로부터 지역재생계획을 인정받고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선진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심층사례분석을 통해 일본 지방소도시 재생사업의 實體를 實證하고자 한다. (제4장)

마지막으로 상기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소도시 재생을 위한 基本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

## 2. 연구의 흐름



〈그림1-1〉 연구 흐름도

## 제4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최근 일본의 지역활성화사업은 추진하는 기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즉 도시재생본부,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 지역재생본부,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 4본부가 있다. 각각의 본부에 대한 특징 및 비교는 제2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 본 연구의 범위를 추진기관 및 지역규모로 한정하면 다음과 같다.
- 상기의 도시(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중 지역재생본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내각부에 의해 지역재생계획이 인정받은 지역

- 지역재생본부는 2005년 6월(제1회 인정)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9회에 걸쳐 1,006지역<sup>2)</sup>(시정촌)의 지역재생계획을 인정해 줌
- 본 연구에서는 상기 인정받은 지역 가운데 인구 10만이하의 시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65개 시지역 182건(한 지역에서 복수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음)의 지역재생계획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함
- 심층사례분석은 상기의 182건의 지역재생계획 가운데 지역재생본부에 의해 우수시지역으로 추천받은 2지역을 대상으로 함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이라는 3가지 방법론을 택하였다. 특히, 理論的 내용 보다는 實證的 사실의 내용을 深度 있게 다루려고 현지조사에 중점을 두었다.

문헌조사는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1차 자료와 문헌검색, 관련기관 요청을 통해 입수한 2차 자료를 근거해 정리, 분석하였다.

현지조사는 지역재생사업이 실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장에 직접 가서 관찰하는 現地觀察(field observation)과 지역재생사업과 관련된 사업주체자(지역주민, 공무원 등)들과 면접(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를 정리, 분석단계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일본사례연구임을 감안해 일본현지의 전문가 자문을 가급적 많이 얻고자 시도하였다.

〈표1-1〉 연구 방법 개요

조사 방법		조사 내용	조사 대상
문헌 조사	1차 자료 수집	지역재생사업내용 지역재생사업성과	지역재생계획서 사업경과기록지
	2차 자료 수집	대상지역의 특성 관련분야 연구동향	지역통계자료집 연구논문, 보고서 등
현지 조사	현지관찰법	지역재생사업 추진실태 파악	구마모토현 아라오시 오이타현 분고다카타시
	면접법	사업주체자들의 역할 등을 파악	지역주민, 공무원 등
전문가 자문		센가유타로(동경농공대학 교수) 키도코로데츠오(동경대학 교수) 김두철(오까야마대학 교수)	

2) 1,006지역 내에는 도중에 합병된 지역도 있으며 한 지역에서 사업내용을 달리하여 복수로 지역재생계획을 인정받은 곳도 존재하여 실제로는 그 보다 적은 약 950지역(시정촌)이 인정을 받음.

## 제5절 용어 정리

### 가. 지역재생

지역재생이란 一般的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고용기회의 창출 등 총체적인 지역 활력의 재생(재활성화)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산업, 기술, 인재, 관광 자원, 자연 환경, 문화, 역사 등 諸地域資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지역의 基幹的인 산업의 재생, 신산업 창출,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을 지역재생이라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역재생의 범위는 일본 내각부 내의 지역활성화통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사업,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 지역재생사업이라는 4가지 핵심사업 가운데 지방소도시재생과 관련이 깊은 지역재생사업에 한정 한다.

### 나. 지방소도시

일반적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 30만에서 50만 명을 중도시, 30만 이하를 소도시라고 하고 있다. 연구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와 중도시 그리고 소도시라는 용어를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도시라는 개념을 10만 명 이하의 시급도시로 정의한다.

### 다. 지역개발주체

본 연구에서의 지역개발주체란, 일정지역에서 지역의 문제를 발견,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주민 또는 조직(집단), 행정기관, 기업 등을 말하며 이러한 주체들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지역발전정책에 있어 意思決定權 및 主導權이 주어지는 등의 중핵적인 역할을 한다.

## 제2장 일본의 지방소도시지역의 재생정책 및 추진현황

이 장에서는 우선 일본의 중앙정부인 내각부(内閣府) 내 지역활성화통합회합에 설치돼 있는 지역 활성화사업을 총괄하는 4본부에 대해서 간략히 비교, 검토한 후 지방소도시와 관련이 깊은 지역재생 사업만을 발췌하여 지역재생사업의 추진배경, 개요, 추진체계, 현황, 및 평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 제1절 일본의 지역활성화 4본부의 비교

최근 일본의 지역활성화사업의 핵심은 내각부(内閣府) 내 지역활성화통합회합에 설치돼 있는 도시 재생본부의 도시재생사업,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의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 본부의 구조개혁사업, 그리고 지역재생본부의 지역재생사업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사업은 근거법, 사업목적, 사업대상구역, 사업내용, 지원조치형태, 추진절차 등이 相異하다.

4가지 지역활성화사업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도시기능의 고도화 및 도시거주환경 향상을 목적으로 주로 도쿄, 오사카 등 거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은 지방 중핵도시(현청소재지)를 대상으로 중심시가지의 정비개선 및 상업활성화가 그 목적이다. 또한 구조개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가장 늦게 추진된 지역재생사업은 주로 지방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산업진흥, 환경개선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상기의 4가지 사업을 비교해 놓은 것이 표2-1이다.

〈표2-1〉 일본의 지역활성화 4본부 비교

	도시재생본부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	지역재생본부
본부설치 시기	2001년 5월	1998년	2002년 7월	2003년 10월
근거법	도시재생특별조치법 2007년3월31일 최종 개정	중심시가지활성화법 2006년5월 개정	구조개혁특별구역법 2007년3월31일 최종 개정	지역재생법 2007년3월31일 최종 개정
목적	도시기능의 고도화 및 도시 거주환경 향상	중심시가지의 정비개선 및 상업활성화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지역의 활성화 도모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산업진흥, 환경개선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사업대상 구역	1. 도시재생진급정비지역(1ha이상) 2. 도시재생특별지구	중심시가지활성화구역	지방자치체(시정촌 또는 시도부현 또는 복수 지자체)전부 또는 일부	특별히 없음(대다수 시정촌 전역)
사업추진 지역	1. 거대도시(도쿄, 오사카의 중심시가지) 2. 지방 중핵도시(현청소재지)	1. 지방 중핵도시(현청소재지) 2. 30만 이상의 지방도시	1. 전국의 市町村 2. 전국의 都道府縣	1. 전국의 시정촌 2. 지방 중소도시 3. 농촌지역(町, 村)
주요사업내용	1. 대도시권 국제교류, 물류기능강화 2. 대도시권 환상도로체계정비 3. 오사카권 생명과학 국제거점 형성 4. 도쿄권에 개농과 학 국제거점 형성 5. 지방 중핵도시 선진적 개성도시 만들기	1. 중심시가지 정비개선 2. 도시 복지시설 정비 3. 시가지 거주 촉진 4. 상업활성화	1. 국제공항특구 2. 농업특구 3. 교육특구	1. 생활환경정비사업(도로, 상하수도) 2. 지역산업육성 및 지역고용창출 3. 도농교류 및 관광진흥
지원조치형태	교부금+규제특례+금융지원+세제특례	규제특례+세제특례+보조금	규제특례	교부금+규제특례+보조금+과세특례
추진절차		자치단체가 중심시가지기본계획작성→인정신청→내각부가 관계 행정기관장의 동의를 얻음→인정	제안모집→자치체가 제안→내각부가 관련성청과 조정→특구계획작성 및 인정신청→인정(내각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재생계획작성→인정신청→내각부가 심사, 관계 성청과 조정→인정
사업추진현황	도시재생프로젝트선정 2001년(1차)~2007년(13차)에 걸쳐 23개 프로젝트 선정	2006년 법 개정 후 53개시 인정	2003년4월~2007년10월 963특구 인정	2005년4월~2008년6월 1,023개 시정촌 인정
주요관할성청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총무부,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재무성, 법무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 제2절 지역재생사업의 추진 배경

### 가. 국가(중앙정부)주도의 지역개발 및 진정(陳情)행정의 한계

戰後부터 90년대 말까지 일본의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책을 국가가 정한 시나리오대로 실시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즉, 국가가 정한 방침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에 신청, 국가에 의해 계획이 승인되어지면 보조금이 교부되어지는 시스템인 것이다. 또한 보조금제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입장만 고려한 복잡하고 엄격한 보조기준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한 점도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정책형성시스템 상황 하에서는 지역의 政策形成力은 自生할 수 없으며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 해결하고자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따르며 된다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나. 국가(중앙정부)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최근 들어 90년대 말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국가의 재정상황 악화, 거센 지방분권의 물결, 민영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 전후 60년간 지속돼오던 중앙정부집권식 정책형성시스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변화를 2002년에 구조개혁특구제도, 2003년에 지역재생제도가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 제도의 최대의 포인트는 지역으로부터의 제안을 내각부 내에 설치된 조직이 받게끔 되었다는 점이며, 그 조직은 사업을 소관 하는 성청(省廳)의 입장이 아닌 제안자의 입장에 서서 담당성청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 본격적 지역재생 추진

지역의 특정사업이 민간의 力量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자체의 혁신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2003년 10월 내각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생본부를 내각부에 설치하여 2005년 4월 시행된 지역재생특별법을 토대로 본격적인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기존의 지역활성화 시책과 다른 점은, 지역의 요구와 독창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고, '自主·自立·自考'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창의를 도출함으로써 지역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가(중앙정부)가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함
- 즉,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스스로 사업을 구상, 추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표2-2〉 지역재생제도의 연혁

2003년 10월	지역재생본부 발족(본부장 : 내각총리)
2003년 12월	지역재생추진을 위한 기본방침 결정
2004년 2월	지역재생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결정
2004년 12월	교부금제도 창설 : 지역재생기반강화 교부금
2005년 4월	지역재생특별법 공포 시행
2005년 6월~7월	제1회 지역재생계획 인정(453건)
2005년 11월	제2회 지역재생계획 인정(110건)
2006년 3월	제3회 지역재생계획 인정(140건)
2006년 7월	제4회 지역재생계획 인정(77건)
2006년 11월	제5회 지역재생계획 인정(30건)
2007년 3월	제6회 지역재생계획 인정(58건)
2007년 3월	지역재생법 일부 개정
2007년 7월, 9월	제7회 지역재생계획 인정(74건)
2007년 11월	제8회 지역재생계획 인정(19건)
2008년 3월	제9회 지역재생계획 인정(45건)
2008년 5월~6월	제10회 지역재생계획 인정(60건)

### 제3절 지역재생사업의 개요

#### 1. 지역재생의 기본이념 및 정의

##### 가. 지역재생의 기본이념

지역재생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생활을 영위하고 매력적인 마찌쯔쿠리(まちづくり ; 지역만들기),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역재생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그 기본이념이 있다.

지방재생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생활자의 생활보장, 중소기업진흥, 농림수산업진흥, 교류인구의 확대 등을 통해 지방과 도시의共生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두 지역의 거주주민이 관광, 체험, 교류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국민전체가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국가 기본방침으로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재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나. 지역재생의 정의

지역재생이란 지역의 산업, 기술, 인재, 관광자원, 자연환경, 문화, 역사 등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그 지역의 基幹的인 산업재생 및 새로운 산업창출, 고용유발, 커뮤니티재생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재생법(2005년 법률 제24호)<sup>3)</sup>에 의거 “지역재생계획”을 책정하여 지역재생본부(본부장 : 내각총리대신)로부터 인정(지역재생법 제5조 제3항)을 받게 되면 보조금 등 다양한 특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특별조치란, 과세의 특세(지역재생법 제14조), 지역재생 기반강화교부금의 교부, 보조대상시설의 전용(轉用)절차의 특례(지역재생법 제21조)를 의미한다.

## 2. 지역재생의 원칙

#### 가. 보완성(補完性)의 원칙

지역의 실정에 가장 정통한 주민, NPO<sup>4)</sup>,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立案되어진 실현성이 높고 효과적인 계획에 대해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나. 자립(自立)의 원칙

지역의 자원 및 지혜를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을 향해 노력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다. 공생(共生)의 원칙

지방(농촌)과 도시가 인(人)·물(物)·금(金)의 교류·연대를 통해 서로 떠받쳐 共生을 추구하는 계획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라. 종합성(綜合性)의 원칙

중앙정부는 지역의 창의에 기초된 계획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마. 투명성(透明性)의 원칙

지원의 대상이 되는 계획의 책정, 지원의 계속 및 계획종료시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3) 2007년 3월에 일부 개정됨

4) NPO란 Non Profit Organization의 약자 이며, 말 그대로 비영리단체로 경상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서 공익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라 정의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시행을 계기로 급증하여 2006년 2월 현재 약 25,000개의 NPO단체가 설립되어 있다.

### 3. 지역재생의 의의 및 목표

최근 급속한 저 출산 및 고령화의 진행,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의 지리적, 자연적 특성 및 문화적 유산, 다양한 인재들의 창조력 등을 활용하여 민관(民官)의 적절한 연대 하에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방식으로 지역경제 및 사회 등을 활성화하는데 지역재생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자주적·자립적인 추진방식과 중앙정부의 지원책이 연계되어 지역재생을 실현함으로써 국가전체의 활력을 향상시키는 것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역재생은 이러한 관점에서 ① 지역 간의 경쟁 서포터 및 촉진, ② 보조금 개혁 등에 의한 자주 재량성의 확대 및 존중, ③ 민간의 노하우, 자금 등의 활용촉진, ④ 구조개혁특구, 도시재생사업,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즉, 각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발굴하여 이들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지역산업 진흥, 생활환경 개선, 관광·교류 촉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지역재생의 목표를 두고 있다.

### 4. 지역재생사업의 추진기관 및 근거법

가. 지역재생추진체 : 지역재생본부(지역재생법 제23조)

지역재생본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고용의 새로운 고용창출 등을 지역의 시점에서 적극적,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10월에 내각부에 설치 된 기구 이며 도시재생본부,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 중심시가지화본부와 함께 지역활성화관계의 4본부 중의 하나이다.

지역재생본부에서는 지역재생기본방침안의 작성에 관한 사무, 인정 신청을 한 지역재생계획의 의견에 관한 사무, 인정지역 재생계획의 원활, 확실한 실시를 위해 시책의 종합조정 및 지원조치 추진에 관한 사무 등을 행한다(지역재생법 제24조).

지역재생본부의 조직은 지역재생본부장(내각총리대신), 지역재생부본부장(國務大臣), 지역재생본부원(모든 국무대신)으로 구성되어 있다(지역재생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나. 지역재생추진 근거법 : 지역재생법(부록자료3 참조)

지역재생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법은 2005년 법률 제24호 지역재생법(2007년 3월에 일부 개정)이다. 지역재생법에는 지역재생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이념 및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재생계획을 작성,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그 계획이 인정받게 되면 지역재생법에 근거하여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제4절 지역재생사업의 추진 체계

### 1. 추진 주체

지역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地緣조직, 상공회조직, 사업자, 시민단체(NPO 등), 有識者 등 지역의 다양한 개발주체가 연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역재생법에 의거하여 '지역재생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지역재생협의회'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재생계획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는 반드시 포함되며 지역재생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地緣조직, 상공단체, 有識者, 시민단체(NPO 등) 등은 임의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다.

'지역재생협의회'의 역할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단체와 협의하며, 협의회에서의 협의내용은 지역재생계획서에 기재하여 내각부에 인정신청 할 때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재생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한 후 지역재생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기재한 지역재생계획서를 작성, 내각부의 인정을 받아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그림2-1 참조). 지역재생계획서(부록자료4 참조)에는 지역재생계획의 명칭, 작성주체, 계획구역,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계획기간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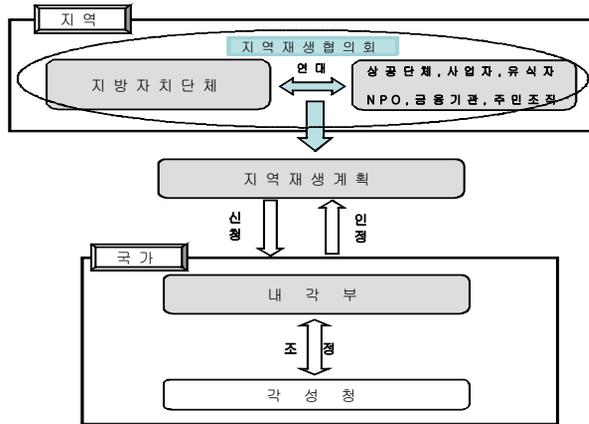
한편 내각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지역재생계획서를 검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관련 성청(省廳)과의 협의 및 조정 등 총괄적인 역할을 한다.

### 2. 지역재생계획의 인정 절차

지역재생사업 지정을 위한 신청은 지자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자체가 지역재생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NPO, 지역주민, 관련단체, 민간사업자 등을 통해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여 반영해야 한다.

지역재생사업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추진사업은 지역재생법 제13조 제2항의 교부금의 종류로 정해진 시설의 범위에 한정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또한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시행하여 사후평가가 가능한 목표를 설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성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 지역재생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지역재생계획서에 기재된 지원조치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장(해당 성청(省廳)의 대신(大臣))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지역재생사업 계획에 지원조치를 활용하여 실행하는 사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원조치에 관한 관련 행정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장은 기한 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의 회답을 해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장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림2-1〉 지역재생계획의 인정 절차

지역재생사업 계획은 지역재생기본방침에 대한 적합 여부, 해당지역이 재생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들이 실시됨으로써 그 지역재생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 원활하고 순조롭게 사업이 실시될 수 있는가 등을 기준으로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 내각총리대신은 상기의 3가지 인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지역재생계획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지역재생사업 계획을 인정한다.

## 제5절 지역재생사업의 추진 현황

### 1. 추진 현황 개요

2005년 4월 지역재생법(2005년 법률 제25호)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2005년 6월 전국의 453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재생계획을 인정(제1회)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후 2008년 3월까지 총 9회에 걸친 신청 및 인정이 있었으며 누계 1,00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재생계획을 인정받았으나 시정촌 통합(병합)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99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정을 받은 상태이다(표2-3 참조). 이 수는 전국의 1,822개(2008년 3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54.8%에 해당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10만 명 이하의 시지역에서 인정받은 건수는 182건(전체의 18.1%)이며, 한 지역(시)에서 복수로 인정받은 건수를 제외한 순 지역수로서는 165지역이다.

전국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가운데 나가노현(長野縣)이 총 47건(전체의 4.7%)으로 가장 많은 지역재생계획이 認定받았으며, 홋카이도(北海道) 41건, 아이치현(愛知縣) 37건 순으로 많은 인정을 받았다. 반면, 가가와현(香川縣)의 경우 5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도시재생과 관련이 깊은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도쿄도(東京都)가 6건, 교토부(京都府)가 11건으로 지역재생계획의 인정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3〉 지역재생계획의 인정 현황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합계
北海道	8	1	1	9	1	3	11	4	3	41
青森縣	6	3	4	2	1	0	3	0	2	21
岩手縣	13	8	7	1	0	3	2	0	0	34
宮城縣	6	2	6	1	0	0	0	1	0	16
秋田縣	9	0	3	5	1	2	4	0	0	24
山形縣	7	1	3	2	0	0	0	0	0	13
福島縣	12	0	3	1	1	0	0	1	1	19
茨城縣	20	2	4	0	1	2	0	0	4	33
栃木縣	14	1	9	0	0	3	0	0	1	28
群馬縣	14	3	12	0	0	0	1	0	1	31
埼玉縣	3	7	3	1	1	3	1	1	0	20
千葉縣	7	1	2	0	1	1	1	0	0	13
東京都	2	1	1	0	0	0	2	0	0	6
神奈川縣	5	2	3	3	1	0	0	1	0	15
新潟縣	12	3	0	2	0	3	2	2	1	25
富山縣	5	1	2	1	1	0	0	0	0	10
石川縣	11	3	1	1	0	3	3	0	2	24
福井縣	11	3	2	3	0	1	0	0	1	21
山梨縣	13	2	3	1	1	0	0	0	1	21
長野縣	24	3	8	2	2	4	3	0	1	47
岐阜縣	11	1	0	1	0	0	0	0	0	13
靜岡縣	15	3	3	1	0	1	1	0	3	27
愛知縣	21	4	0	2	3	1	4	0	2	37
三重縣	11	8	2	0	0	3	3	0	0	27
滋賀縣	2	4	1	3	1	1	1	0	0	13
京都府	6	1	2	1	0	0	1	0	0	11
大阪府	9	1	0	3	0	1	2	1	0	17
兵庫縣	11	2	2	3	1	2	2	3	2	28
奈良縣	8	0	0	0	2	0	1	1	1	13
和歌山縣	11	1	2	3	1	0	0	0	0	18
鳥取縣	7	1	2	0	0	0	0	0	0	10
島根縣	15	1	5	1	0	1	1	0	1	25
岡山縣	14	4	6	2	0	1	1	0	4	32
廣島縣	8	2	1	3	1	0	0	0	1	16
山口縣	6	1	3	0	1	0	0	1	1	13
德島縣	4	1	7	0	0	0	2	0	2	16
香川縣	2	1	0	0	1	1	0	0	0	5
愛媛縣	8	3	1	3	0	3	2	0	3	23
高知縣	5	4	3	1	1	3	5	1	0	23
福岡縣	11	4	4	2	1	3	1	1	4	31
佐賀縣	13	3	2	0	0	4	1	0	0	23
長崎縣	6	4	2	2	0	0	3	1	1	19
熊本縣	13	3	3	1	2	3	2	0	0	27
大分縣	8	4	5	1	0	2	1	0	0	21
宮崎縣	16	1	3	0	0	0	1	0	2	23
鹿兒島縣	9	1	4	4	1	0	2	0	0	21
沖繩縣	1	0	0	5	2	0	4	0	0	12
합계	453	110	140	77	30	58	74	19	45	1006

## 2. 재생사업의 유형별 특징

### 가. 기초 통계자료로 본 특징

조사대상지 165개 지역의 인구, 세대수, 면적, 고령화비율의 평균은 아래와 같다 (부록자료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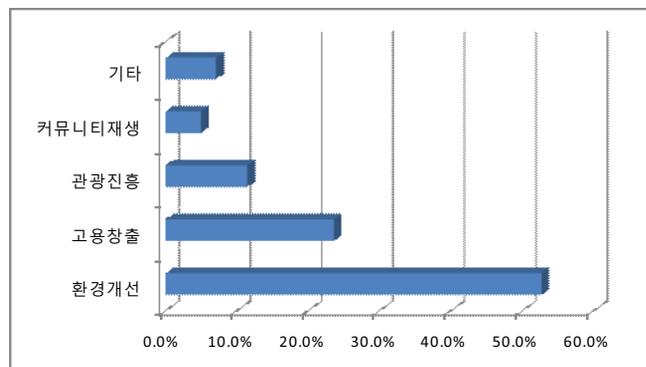
- 평균 인구는 54,253명
- 평균 세대수는 18,899호
- 평균 총면적은 약 321km<sup>2</sup>
- 평균 고령화비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24%

### 나. 지역재생사업 목적별로 본 특징

조사대상인 182건의 지역재생계획서를 토대로 사업목적별 유형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부록자료2 참조).

- 생활환경·자연환경 등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96건)
- 지역산업(향토 산업)육성 및 새로운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43건)
- 都農교류·국제교류를 포함한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21건)
- 지역주민자치활동활성화 등 지역커뮤니티재생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9건)
- 신에너지활용 등 친환경지역만들기를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5건)
- 문화예술·건강복지·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8건)

상기의 유형 가운데 생활환경·자연환경 등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계획이 전체의 52.7%를 차지하였고, 지역산업육성 및 새로운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계획은 23.6%를 차지한다. 그 외 관광진흥 목적 11.5%, 지역커뮤니티재생 목적 5.0%, 친환경지역만들기 목적 2.7%, 기타 4.4%순으로 나타났다(그림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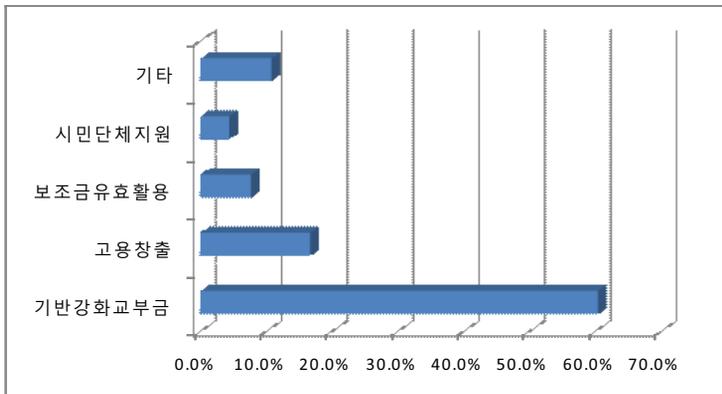
<그림2-2> 지역재생사업의 목적별 비율

다. 지역재생사업 지원조치내용별로 본 특징

조사대상인 182건의 지역재생계획서를 토대로 지원조치(교부금 등)에 따른 유형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부록자료 2참조).

-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110건)
- 지역고용창조촉진사업(30건)
- 보조금대상시설 유효활용(轉用)사용(14건)
- 지역재생관련 시민단체활동지원사업(8건)
- 과세특례 및 저리용자사업(6건)
- 기타(9건)
- 지원조치 받지 않음(5건)

지원조치 가운데 생활환경·자연환경 등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이 전체의 60.4%로 월등히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고용창출을 위한 지역고용창출촉진사업이 16.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보조금대상시설의 유효활용조치 7.7%, 지역재생관련 시민단체활동지원사업 4.4%, 과세특례 및 저리용자사업 3.3% 순으로 나타났다(그림2-3).



〈그림2-3〉 지역재생사업의 지원조치내용별 비율

# 제3장 일본의 지방소도시 재생을 위한 지원 체제

## 제1절 지역재생사업지원의 3대 핵심

### 1. 지역의 인재 육성 및 인재 네트워크 지원

일본의 경우 지역재생사업추진의 핵심이 되는 주체의 참가 및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다.

예를 들면, 지역지식거점재생프로그램, 지역고용재생프로그램, 지역유대재생프로그램, 지역재도전(재취업)추진프로그램, 지역온난화대책프로그램이 있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 장의 후반에 다루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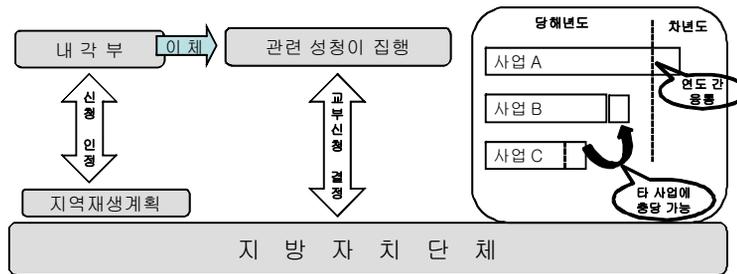
### 2. 보조금개혁 등에 의한 지역의 自主裁量性 확대

#### 가.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

-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 신설(2005년)
  - 내각부에 예산이 일괄 계상(計上)되어, 지역의 재량에 의해 자유롭게 시설 등을 배치할 수 있으며 또한 계획 신청 등의 창구일원화로 사업 간의 예산 융통 및 년도 간의 사업량 변경이 간단하게 처리 됨. 즉, 연도별 및 사업 간의 융통이 가능 함(그림2-1).
  - 교부금은 내각부에 일괄 계상된 예산을 내각부가 배분하여, 각省廳(내각부,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이 집행
-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에는 도(道)정비교부금, 우수처리시설정비교부금, 항만정비교부금이라는 3가지 교부금이 있음
  - 도(道)정비교부금 : 시정촌도, 광역농도, 임도 가운데 다른 2가지 이상의 시설정비를 지원(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 우수처리시설정비교부금 : 생활환경정비를 위한 공공하수도, 집락배수시설, 정화조 등 우수처리시설 가운데 다른 2가지 이상의 시설정비를 지원(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 항만정비교부금 : 지방항만의 항만정비 및 1종어항의 어항정비를 지원(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 교부금의 연도 간 융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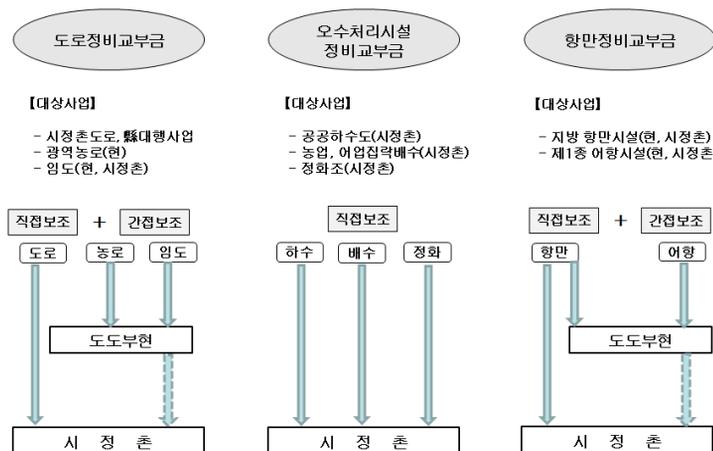
- 종래의 보조금과 달리 단 년도마다의 보조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일정의 범위에서의 국비 반환 및 이월 절차가 필요 없음
- 사업 기간 전체의 국비 총당률(보조율)이 적절하다면 단 년도의 총당률과 관계 없이 탄력적으로 사업 실시가 가능
- 예를 들어 (a)사업 + (b)사업의 국비) ÷ (a)사업 + (b)사업의 사업비) = 50%에 맞추면 됨



<그림3-1>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

• 교부금의 타 시설에의 융통

- 종래의 보조금과 달리 교부결정액의 1/2미만은 타 시설에 총당 가능
- 도로, 오수처리, 항만 등 분야 간의 융통은 불가능
- 시설 별 최종적인 총당률(보조율)은 전체 사업 기간의 국비 총당률에 적정하다 면 문제없음



<그림3-2>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 배분 방식

•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의 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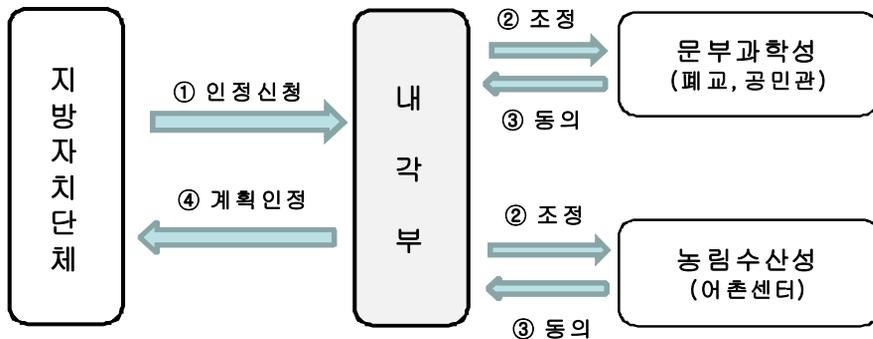
- 교부금 부담률 : 국고 50%, 지자체 50%
- 2008년도 예산액 : 1,446억 엔(2005년 810억 엔, 78.5%증액)
- 교부기간 : 5년 이내
- 교부금 활용 절차 : 지역재생계획 작성 → 지역재생계획 인정 → 교부금 신청
- 지금까지 인정받은 10만이하의 시지역의 경우 약 60%의 지역에서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을 신청함(실질적으로 교부금을 받는 확률은 신청건수의 약 20%)
- 이 교부금은 사무부담, 교부금의 융통, 지방부담 등의 관점에서 직접교부와 간접교부를 혼용하고 있음 (道정비교부금 : 도로 - 직접보조, 농도, 임도 - 간접보조  
 우수처리시설정비교부금 : 직접교부, · 港정비교부금 : 항만 - 직접+간접, 어항 - 간접)

나. 보조대상재산의 유효 활용

- 교부금 등의 교부에 의해 정비된 학교 및 사회체육시설 등의 유효한 활용을 통해 지역재생을 지원하는 제도(全府省廳)
- 보조대상재산의 운용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3개월 이내 처리)
- 지역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추가적인 재정부담 억제
- 2007년 10월 현재 50개의 지역에서 기존시설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약 150억엔의 재정 부담이 경감됨

사례 : 후쿠오카현 구로키마치(福岡縣黒木町)

- 사업명 : 보조금으로 정비 된 폐공립학교의 校舎의 전용 탄력화
- 사업내용 : 폐교된 초등학교의 校舎 등을 체험교류시설로 전용하여, 농업체험 등의 농촌관광을 위한 중핵시설로 전용, 또한 지역 대학의 學外연수거점시설로 이용



<그림3-3> 보조대상시설의 유효활용 절차 예

### 3. 민간의 노하우, 자금 등의 활용 촉진

지역재생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행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투자에 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통한 민간의 노하우, 자금 유도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지역재생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재생사업을 행하는 민간기업(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 투자액공제, 손실연장, 양도수익축소 등의 세제상 특례조치가 주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재생사업이란, ①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등 공익적 시설의 정비운영 사업, ② 환경대책을 위한 신에너지 시설 등의 정비운영 사업, ③ 지장산업(향토산업) 지원을 위한 실험, 연구시설 등의 정비운영 사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민간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① 상근 고용자가 10명 이상, ② 지역재생사업을 행하는 기업, ③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5/100이상 1/3이하의 주식을 보유, ④ 비상장회사, ⑤ 중소기업(대기업의 자회사 불 포함), ⑥ 주식투자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 제2절 지역재생 지원프로그램의 내용 및 특징

지역재생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크게 7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분돼 있다. 즉 지역고용재생프로그램, 지역유대재생프로그램, 지역제도전추진프로그램, 지역교류·연대추진프로그램, 지역산업활성화재생프로그램, 지역지식거점재생프로그램, 그리고 2008년에 새롭게 추가된 지역온난화대책추진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각 지원프로그램별로 2008년 3월 현재 53개의 세부지원책이 구축되어져 있다. 세부지원책은 교부금과 규제완화로 대별 할 수 있는데 교부금이 지급되는 프로그램은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 강령농업만들기교부금 등 8개가 마련되어 있다. 그 외 프로그램은 규제완화 및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특히, 농림수산성은 8개의 교부금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표3-1〉 지역재생사업 지원프로그램 및 세부지원책

지원 프로그램명	목적	세부지원책	관계성청
지역고용재생프로그램	자주·자발적인 지역고용 재생	지역고용창조추진사업	후생노동성
		지역고용전략팀 구성	후생노동성
		청년자립지원네트워크정비모델사업	후생노동성
	기업입지촉진 및 외국기업유치	지역기업입지촉진등보조사업	경제산업성
		외국기업유치지역지원사업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지역자원활용프로그램	경제산업성
	산지경쟁력강화, 지역농업 구조개혁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	농림수산성
		산촌재생종합대책사업	농림수산성
		어업제도지원사업	농림수산성
	지역관광진흥, 외국인여행자유치, 광역적 인적교류 등에 의한 지역활성화	관광르네상스사업	국토교통성
Visit·Japan·Campaign		국토교통성	
지방자립·활성화종합지원제도		국토교통성	
지역재생사업을 통한 새로운 고용창조	지역재생에 이바지하는 민간프로젝트에 대한 과세특례	내각부	
	제도전지원기부금제도	내각부	
지역재생프로젝트의 형성·사업화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저리용자	재무성	
지역유대재생프로그램	지역만들기사업에 다양한 주체 참가 추진	시민활동단체등지원종합사업	국토교통성
		지역재생에 이바지하는 민간프로젝트에 대한 과세특례	내각부
		제도전 지원 기부금 세제	내각부
	지역의 교육력·문화력의 향상	문화예술에 의한 창조지역만들기 지원사업	문부과학성
	청년층의 자주성을 활용한 지역활력의 향상	청년층자립지원네트워크정비모델사업	후생노동성
농촌커뮤니티재생에 의한 지역활력의 향상	강한농업만들기 보조금	농림수산성	
관광교류를 통한 지역활력의 향상	관광르네상스사업	국토교통성	
지역의 제도전추진 프락램	고령자·장애자·청년층의 제도전	제도전지원기부금세제	내각부
		청년층자립지원네트워크정비모델사업	후생노동성
	농어촌의 시설정비, 시스템확립, 인재육성을 통한 제도전	농산어촌활성화프로젝트지원교부금	농림수산성
	농촌의 사업창출아이디어를 통한 제도전	농촌커뮤니티재생·활성화지원사업	농림수산성
지역자립을 위한 제도전	지역자립·활성화종합지원제도	농림수산성	
지역교류·연대추진프로그램	농산어촌 정주촉진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	농산어촌활성화프로젝트지원교부금	농림수산성
		농촌커뮤니티재생·활성화지원사업	농림수산성
		광역연대공생·대류등추진교부금	농림수산성
		광역연대공생·대류등정비교부금	농림수산성
	농산촌 산지경쟁력의 강화, 후계자 육성, 거주환경정비, 산림종합정비 등	마을산(里山)구역 재생교부금	농림수산성
		상하류연대활기유역프로젝트사업	농림수산성
철도·도로등의 종합적인 지역공공교통기관의 활성화·재생, 광역적 지역활성화	지역공공교통활성화·재생사업	국토교통성	
	지역자립·활성화종합지원제도	국토교통성	

	지역브랜드개발 등 관광진흥	관광르네상스사업 Visit·Japan·Campaign	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
지역산업활성화재생프로그램	지역투자자교육, 중소기업의 재생·재기업추진	투자자교육프로젝트연대사업	경제산업성
	지역산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외국인연구자 수용	외국인연구자등에 관한 영주허가탄력화사업	법무성
		외국인연구자등에 대한 입국신청수속우선처리사업	법무성
	지역프로젝트의 형성·사업화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저리용자	재무성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인재교육, 도시부의 산학관연대 촉진	과학기술진흥조정비	문부과학성
		도시부의 산학관연대촉진사업	문부과학성
		수퍼전문고등학교	문부과학성
	지역바이오매스활용, 식품산지브랜드확립, 농어업진흥	지역바이오매스활용교부금	농림수산성
		식료산업클러스터 전개사업	농림수산성
	기업입지, 신규산업기술개발, 자원 활용	지역기업입지촉진등보조사업	경제산업성
지역신규산업창조기술개발비보조사업			
외국인기업유치지역지원사업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지역자원활용프로그램			
지역의 관광자원, 외국인유지촉진, 광역적인 인적교류, 물자유통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	관광르네상스사업	국토교통성	
	Visit·Japan·Campaign	국토교통성	
지역지식거점재생프로그램	지역에 공헌하는 인재 창출	과학기술진흥조정비	문부과학성
	지역활성화에 공헌하는 연구개발	현대적교육요구지원프로그램	문부과학성
		국립대학에 의한 지역진흥, 지역공헌 관련사업	문부과학성
	산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외국인연구자 수용	외국인연구자등에 관한 영주허가탄력화사업	법무성
		외국인연구자등에 대한 입국신청수속우선처리사업	법무성
	산학관연대에 의한 고도기술 개발	지역신생consortium에 의한 고도의 연구개발	
	벤처기업에 의한 신규창업, 현장밀착형 농림수산 시험연구	지역신규산업창조기술개발비보조사업	
		지역재생에 이바지하는 실용화기술의 연구개발조성	
		선진기술을 활용한 농림수산연구고도화사업	
	노인복지건강증진 등의 사업, 바이오메스타운구상 실현	고령자활력창조지역재생프로젝트추진	
		지역바이오매스활용교부금	농림수산성
		식료산업클러스터전개사업	농림수산성
	지역관광진흥, 외국인관광객유치, 광역적인 인적교류	관광르네상스사업	국토교통성
Visit·Japan·Campaign		국토교통성	
지역자립, 활성화종합지원제도		국토교통성	
지역은난화대책추진 프로그램	재생가능한 에너지 도입 가속화 사업	환경성	
	저탄소 지역만들기 대책 추진 사업	환경성	

# 1. 지역고용재생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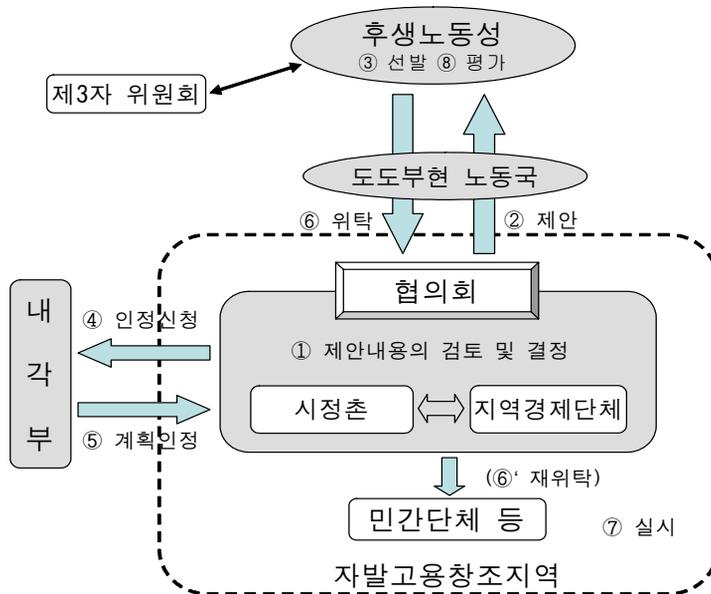
가. 자주·자발적인 지역고용의 재생

- 지역고용창조추진사업(후생노동성)

자발고용창조지역내의 시정촌 또는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제안에 따라 구직자의 고용 기회 창출에 도움이 되는 능력개발 및 취업촉진 등의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해당 협의 회 등에 위탁하여 실시(그림3-4 참조)한다.

고용기회가 적은 지역에 있어서 고용창조에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협의회가 제안한 고용대책사업 가운데 콘테스트방식에 의해 고용창조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지역재생계획 의 인정을 받으면 사업실시를 위탁하는 시스템이다. 대상지역은 고용기회가 적은 지역(과거 3년 및 과거 1년간의 유효구인배율이 전국평균이하) 또는 지역재생계획을 책정하는 등 자발적으로 지 역고용창조를 위한 매진하는 지역이 된다.

실시규모를 살펴보면 위탁 액은 1지역당 1년간 2억 엔 상한, 사업기간은 3년 상한이다. 실시대상지 역은 매년 유식자로 구성된 제3자위원회에서 선별하며 연간 약 35지역을 선정되고 있다. 실시주체 는 지역고용창조협의회(지역 경제단체 및 자치체가 구성한 협의회)이다.



<그림3-4> 지역고용창조추진사업의 개요

- 지역고용전략팀 구성(후생노동성)

도도부현 노동국에 지역고용전략팀을 설치하여 고용사업을 책정,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 현의 관련기관 및 전문가, 지역관계자간의 조정, 협의를 지원한다.

- 청년층자립지원네트워크정보모델사업(후생노동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동에 의해 “지역청년서포터스테이션”을 각 지역에 설치하여, 청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나. 기업입지촉진 및 외국기업유치

- 지역기업입지촉진등보조사업(경제산업성)

기업입지촉진법에 의거하며 지역의 강점을 살린 사업 및 중앙정부의 동의를 받은 기본계획으로서 기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한 기업유치활동, 인재육성활동을 지원한다.

- 외국기업유치지역지원사업(경제산업성)

외국기업의 유치 환경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지역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기업과 외국기업과의 연결 기회(세미나, 심포지엄)를 제공하거나 자치단체가 외국기업 유치활동을 할 때 홍보 등 서포터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지역자원활용프로그램(경제산업성)

기업과 대학이 연대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다. 産地경쟁력강화, 지역농업의 구조개혁, 산림자원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 농림어업 취업

-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금(농림수산성)

산지경쟁력 강화, 후계자 육성·확보, 지역농업의 구조개혁, 효율적 유통시스템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을 지원한다.

- 산촌재생종합대책사업(농림수산성)

풍부한 자연과 문화, 전통 등 산촌지역이 지닌 특유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창출, 도농교류, 산촌커뮤니티재생 등을 지원한다.

- 어업제도전지원사업(농림수산성)

어업취업자 확보를 위해 취업정보 제공, 상담창구 설치, 어업취업준비, 어업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지원한다.

다. 지역관광진흥, 외국인여행자유치, 광역적 인적교류, 물자의 유통 등에 의한 지역활성화

- 관광르네상스사업(국토교통성)

관광입국(立國) 추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지 개발 등 관광 진흥에 매진하고 있는 민간·행정기관을 지원한다.

• Visit·Japan·Campaign(국토교통성)

지역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여행회사, 매스컴 초대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새롭고 매력 있는 여행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 지방자립·활성화종합지원제도(국토교통성)

민간과 연대하고 광역적지역활성화기반정비계획을 기초로 한 소프트·하드 일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자립·활성화교부금, 국토형성사업조정비가 여기에 속한다.

라.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기업에 의한 새로운 고용창조

• 지역재생에 이바지하는 민간프로젝트에 대한 과세특례(내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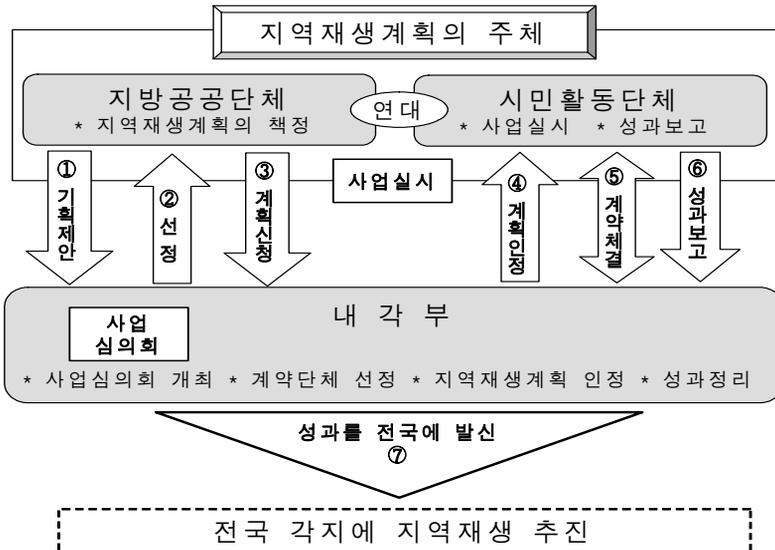
지역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대해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통해 민간자금을 유치한다.

## 2. 지역紐帶재생프로그램

가. 지역만들기사업에 다양한 주체의 참가 추진

• 시민활동단체등지원종합사업(국토교통성)

NPO등 시민활동단체의 활동에 의해 다양한 지역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각 지역의 선구적인 인재육성사업 및 네트워크형성촉진사업을 지원(그림3-5참조)한다.



〈그림3-5〉 시민활동단체등지원종합사업의 개요

- 지역재생에 이바지하는 민간프로젝트에 대한 과세특례(내각부) : 전술 참조
- 재도전(재취업)지원기부금세제(내각부) : 전술 참조

#### 나. 지역의 교육력·문화력의 향상

- 문화예술에 의한 창조지역만들기 지원사업(문부과학성)

지역의 문화예술 창조, 발신 및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여 국가 전체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역재생계획을 신청, 승인 받은 지방공공단체 지원한다.

#### 다. 청년층의 자주성을 활용한 지역활력의 향상

- 청년층자립지원네트워크정비모델사업(후생노동성) : 전술 참조

#### 라. 농촌커뮤니티재생에 의한 지역활력의 향상

- 강한 농업 만들기 보조금(농림수산성) : 전술 참조
- 농촌커뮤니티재생·활성화지원사업(농림수산성)

도시민의 농촌정주 촉진, 농촌과 지역기업의 연대에 의한 새로운 사업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는 NPO법인 등의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재생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산촌력(山村力)유발모델사업(농림수산성)

#### 마. 관광교류를 통한 지역활력의 향상

- 관광르네상스사업(국토교통성) : 전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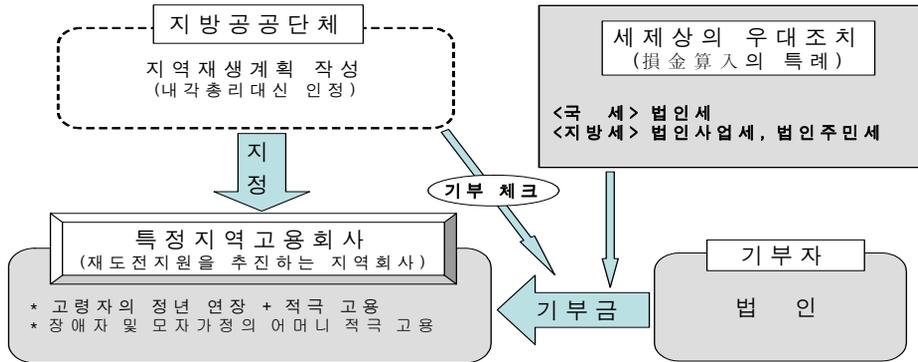
### 3. 지역의 재도전(재취업)지원 프로그램

#### 가. 고령자·장애자·청년층의 재도전

- 재도전(재취업)지원기부금세제(내각부)

고령자·장애자 등의 재도전(재취업)을 지원하는 회사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의 특례 조치(직접형 : 그림3-6 참조)가 있으며 또한 고령자·장애자·여성 등을 대상으로 재도전(재취업)을 지원하는 회사 등에 대해 조성(助成)을 행하는 공익법인(2008년 12월 1일 이후는 특례민법법인)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의 특례 조치(간접형 : 그림3-7 참조)가 있다.

- 청년층자립지원네트워크정비모델사업(후생노동성) : 전술 참조



〈그림3-6〉 재도전지원기부금세제의 개요(직접형)

나. 농어촌의 시설정비, 시스템 확립, 인재육성을 통한 재도전

- 농산어촌활성화프로젝트지원교부금(농림수산성)

농업(농촌)·임업(산촌)·수산업(어촌)과 관련된 시설정비 사업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교부금이다.

다. 농촌의 사업 창출 아이디어를 통한 재도전

- 농촌커뮤니티재생·활성화지원사업(농림수산성) : 전술 참조

라. 지역자립을 위한 재도전

- 지역자립·활성화종합지원제도(국토교통성) : 전술 참조

#### 4. 지역交流·連帶 지원 프로그램

가. 농산어촌 정주촉진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

- 농촌커뮤니티재생·활성화지원사업(농림수산성)

도시민의 농촌정주 촉진, 농촌과 지역기업의 연대에 의한 새로운 사업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는 NPO법인 등의 민간단체 지원(그림3-8 참조)하는 것으로 지역재생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광역연대공생·대류(對流)등추진교부금(농림수산성)

도시의 젊은 층 및 청년은퇴자를 대상으로 농작업체험 등을 통해 共生·對流를 활성화하기 위한 광역연대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재생계획의 인정을 받은 자치단체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공모·선정에 있어 유리하다.

- 광역연대공생·대류(對流)등정비교부금(농림수산성)

도도부현을 초월한 광역적인 연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역재생계획의 인정을 받은 자치단체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교부금 채택에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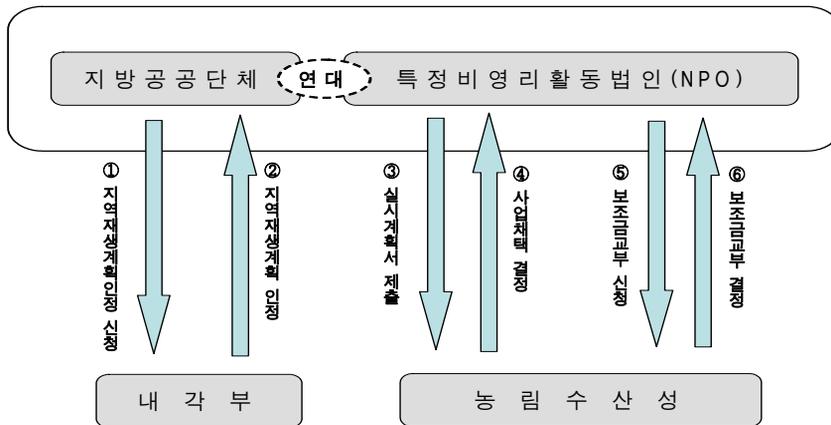
나. 농산촌 산지경쟁력의 강화, 후계자육성, 거주환경정비, 산림종합정비 등

- 마을 산(里山)구역 재생교부금(농림수산성)

지역의 재량을 대폭 확대하여 거주지주변의 산림, 거주기반의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개성적이며 매력적인 마을 산(里山)구역의 재생을 지원하는 것이다.

- 상하류연대활기유역프로젝트사업(농림수산성)

도도부현의 경계를 벗어나 권역의 산림·임업관계자 등과 연대하여 지역자원의 이용확대 등을 펼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그림3-8> 농촌커뮤니티재생·활성화지원사업의 개요

다. 외국기업유치를 위한 외국기업의 발굴, 유치

- 외국기업유치지역지원사업(경제산업성) : 전술 참조

라. 철도·도로 등의 종합적인 지역공공교통기관의 활성화·재생, 광역적 지역활성화

- 지역공공교통활성화·재생사업(국토교통성)

2007년 10월에 시행된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여 철도, 버스, 택시, 여객선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협의회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록 하는 제도이다.

- 지역자립·활성화종합지원제도(국토교통성) : 전술 참조

바. 지역브랜드개발 등 관광진흥, 외국을 향한 정보발신

- 관광르네상스사업(국토교통성) : 전술 참조

## 5. 지역산업활성화 재생 프로그램

가. 지역투자교육, 중소기업의 재생·재기업(起業)추진

- 지역자본시장육성을 위한 투자교육프로젝트연대사업(경제산업성)

본 프로젝트의 내용으로 지역재생계획이 인정받게 되면 금융청의 직원이 강사로서 파견하는 등의 지원을 말한다.

-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및 정리회수(整理回收)기구와의 연대(경제산업성·금융청)

나. 지역산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외국인연구자 수용

- 외국인연구자등에관한영주허가탄력화사업(법무성)

질 높은 연구개발의 추진 및 연구개발 성과가 실용화 되어 신규 사업 창출을 한 지역에 대해 특정 연구기관 등에 연구 등을 행하는 외국인연구자, 정보처리기술자 가운데 국가에 공헌이 인정된 자에 한해 영주허가요건(재류실적기간 등)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재생계획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외국인연구자등에대한 입국신청수속우선처리사업(법무성)

질 높은 연구개발의 추진 및 연구개발 성과가 실용화 되어 신규 사업 창출을 한 지역에 대해 특정 연구기관 등에 연구 등을 행하는 외국인연구자, 정보처리기술자에 관해서는 입국·재류신청 등을 우선처리해 주는 제도로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재생계획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지역프로젝트의 형성·사업화

-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저리융자(재무성) : 전술 참조

라.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인재교육, 도시부의 산학관연대 촉진

- 과학기술진흥조정비(지역재생인재창출거점형성)프로그램(문부과학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거점을 형성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 도시부의 산학관연대촉진사업(문부과학성)

지역의 개성을 중시하며 대학 등의 “지혜” 를 활용하여 신기술 개발, 신규 사업 창출, 연구개발형 지역산업 육성 등을 촉진하는 지원책이다.

- 수퍼전문고등학교(문부과학성)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대하여 첨단기술, 전통산업에 관한 학습활동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특색 있는 전문고등학교를 지원한다.

마. 지역 바이오매스 활용, 식품산지브랜드 확립, 농·어업 진흥

- 지역바이오매스활용교부금(농림수산성)

바이오매스타운(Bio-Mas Town)구상 책정 및 바이오매스의 변환·이용시설 등의 일체적인 정비 등 바이오매스타운의 실현을 향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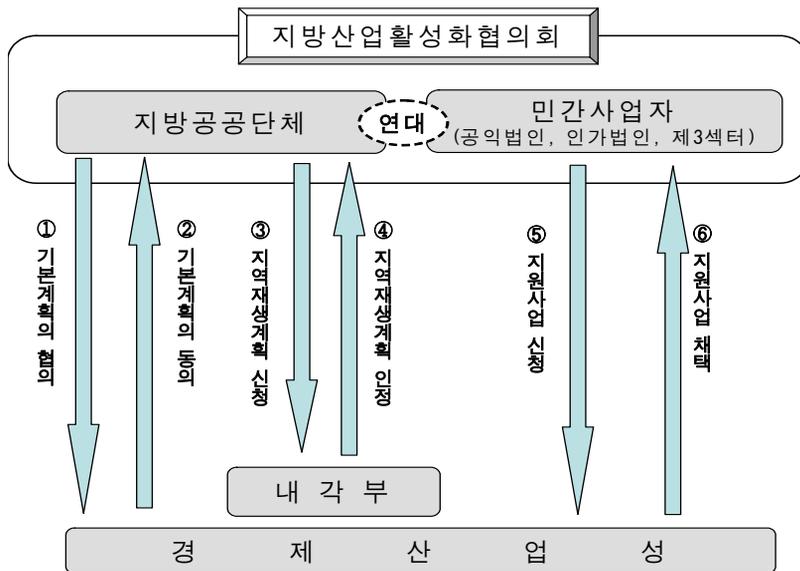
- 식료산업클러스터전개사업(농림수산성)

지역의 식품산업이 핵심이 되어 농림수산업 및 타관련산업과의 연대에 의해 “식품산업클러스터” 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국산 농림수산물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및 판로확대를 지원한다.

바. 지역강점을 활용한 기업입지(외국기업 포함), consortium연구 발, 신규산업기술개발, 자원 활용

- 지역기업입지촉진등보조사업(경제산업성)

기업입지촉진법에 의거하며 지역의 강점을 살린 사업 및 중앙정부의 동의를 받은 기본계획으로서 기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한 기업유치활동, 인재육성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그림3-9 참조).



<그림3-9> 지역기업입지촉진등보조사업의 개요

전략적인 신규기업입지 등을 통한 지역산업활성화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실시주체로서는 공익법인, 인가법인, 제3섹터 등의 민간사업자이다.

- 지역신규산업창조기술개발비보조사업
- 외국기업유치지역지원사업(경제산업성) : 전술 참조
- 중소기업지역자원활용프로그램

사. 지역의 관광자원, 외국인유치촉진, 광역적인 인적교류, 물자유통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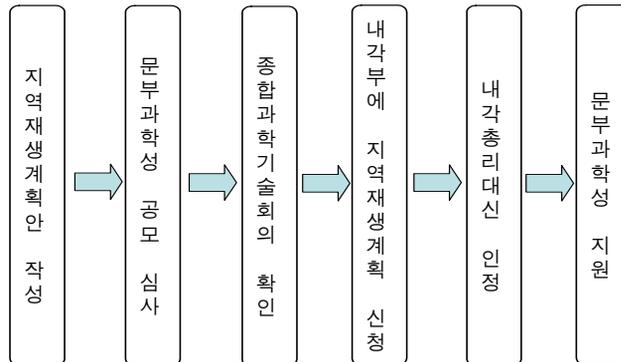
- 관광르네상스사업(국토교통성) : 전술 참조
- Visit·Japan·Campaign(국토교통성) : 전술 참조
- 지역자립·활성화종합지원제도(국토교통성) : 전술 참조

## 6. 지역지식거점 재생 프로그램

가. 지역에 공헌하는 인재 창출

- 과학기술진흥조정비(지역재생인재창출거점형성)프로그램(문부과학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거점을 형성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그림3-10 참조).



〈그림3-10〉 지역재생인재창출거점형성프로그램의 개요

본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재생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대학과 지지체와 연대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실시주체로서는 국공사립대학, 대학공동이용기관, 고등전문학교가 해당된다.

나. 지역활성화에 공헌하는 연구개발 등

- 지방공공단체와 지역대학과의 연대축진을 위한 기부금지출협의의 간소화, 간속화
- 현대적교육요구지원프로그램
- 국립대학법인에 의한 지역진흥, 지역공헌관련사업(문부과학성)

국립대학법인이 지역의 “知的 거점”으로서 교육연구기능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그 힘을 활용하여 지역활성화 등에 의욕적으로 공헌하고자 하는 국립대학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 산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외국인연구자 수용

- 외국인연구자등에관한영주허가탄력화사업(법무성) : 전술 참조
- 외국인연구자등에대한 입국신청수속우선처리사업(법무성) : 전술 참조

라. 산학관연단체(consortium)에 의한 고도의 연구개발

- 지역신생 consortium연구개발사업

마. 벤처기업에 의한 신규창업, 학제(學際)영역 등에 의한 건설기술혁신, 현장밀착형 농림수산시험연구

- 지역신규산업창조기술개발비보조사업
- 지역재생 등에 이바지하는 실용화기술의 연구개발조성
- 선진기술을 활용한 농림수산연구고도화사업

바. 노인복지건강증진 등의 사업, 바이오메스타운구상 실현, 지역食材를 활용한 새로운 전략식품 창출

- 고령자활력창조지역재생프로젝트추진
- 지역바이오메스활용교부금(농림수산성) : 전술 참조
- 식료산업클러스터전개사업(농림수산성) : 전술 참조

사. 지역관광진흥, 외국인관광객유치, 광역적인 인적교류, 물자유통

- 관광르네상스사업(국토교통성) : 전술 참조
- Visit·Japan·Campaign(국토교통성) : 전술 참조
- 지역자립·활성화종합지원제도(국토교통성) : 전술 참조

아. 지역재생프로젝트의 형성·사업화

-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저리융자(재무성) : 전술 참조

## 7. 지역 온난화 대책 추진 프로그램

- 재생 가능한 에너지 도입 가속화 사업(환경성)
- 저탄소 지역만들기 대책 추진 사업(환경성)

## 제4장 일본 지방소도시재생의 심층 사례분석

當初 본 연구에서는 앞의 제2장에서 밝혀진 지역재생사업을 목적별로 유형화 시킨 6가지 유형별 1지역씩 심층사례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연구 수행기간 및 비용 등의 사정으로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재생사업의 총괄기관인 내각부가 선정한 선진사례 가운데 지방소도시에 해당하는 2지역을 선택하여 深度 있는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일본 지방소도시재생의 추진배경, 추진주체, 추진과정, 성과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 분석하기 위해 오이타현 분고다카타시(大分縣豊後高田市), 구마모토현 아라오시(熊本縣荒尾市)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2008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 지역주민, 지역재생 매니저 등과 인터뷰조사를 하였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 입수, 현장 시찰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 제1절 사례분석(1) 오이타현 분고다카타시(大分縣豊後高田市)

#### 1. 분고다카타시의 개요

분고다카타시는 일본 규슈지방 오이타현의 북동부에 위치하며 총면적 207km<sup>2</sup>, 인구 약 25,000명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일본의 지방소도시이다. 2005년 3월 주변의 1市 2町이 합병하여 현재의 분고다카타시가 탄생되었다.

〈표4-1〉 분고다카타시의 개요

인구(명)	세대수(세대)	고령화율(%)	총면적(km <sup>2</sup> )	재정력지수	취업률(%)
25,114	9,694	32.9	207	0.26	96.3

## 2. 재생사업의 추진 배경 및 경위

2008년 현재 분고다카타시의 인구는 약 2만6천 명으로 지방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에도(江戸)시대  
에서부터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쇼와(昭和)30년대까지는 주변지역의 상권을 장악할 정도로 오  
이타현 북부지역 중심상업도시로서 번성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교통사정의 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및 교외에 대형 상점이 입  
지하고, 또한 기존 상점주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접한 우사시(宇佐市), 나카쓰시(中津市)로 상업 集  
積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근년 분고다카타시의 기존 상점가는 쇠퇴해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라 온 고향이기도 한 중심시가지의 상점가를 어떻게든  
다시 살리고 싶다’ 라는 지역주민들의 강한의지를 바탕으로 상점가, 상공회의소, 지역유지 등이 중  
심이 되어 상점가의 부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부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기존의 중심상점가가 가지고 있던 옛 정취 및 개성을 보전하고  
되살리는데 두었다. 즉, 전국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이 지역만의 個性(얼굴)을 찾는 것이다.

역사 및 전통이라는 것이 아주 오랜 옛날에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날을 기준으  
로 볼 때 바로 전 과거라 할 수 있는 30~40년 전의 시대에도 역시 역사와 전통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깨달아 “쇼와(昭和)시대5)”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지역은 과거 상업도시로서 번영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역사를 계승해 온 상인들이  
오늘날도 상점가에 살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역사를 재음미하면서 계승해 내려  
온 쇼와의 상인기질도 재생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도 본 재생사업의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가장 그리워하며 애뜻한 향수를 간직하고  
있는 시대 즉, 상점가가 번성하였던 마지막 시대인 “쇼와 30년대”를 지역재생의 테마로서 가장 어울  
릴 것이라는 지역주민들의 뜻과 의지가 분고다카타시 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배  
경이 되었다. 분고다카타시의 재생사업은 2005년 7월 지역재생계획과 2007년 5월 중심시가지 활성화  
계획이 내각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표4-2〉 분고다카타시의 지역재생 경위

시 기	내 용
1992년도	분고다카타시 상업활성화 구상 책정
1997년 3월	분고다카타시 부흥 심포지엄 개최
2000년도	중심시가지 상점가의 가로 및 수경(修景)에 관한 조사 실시
2000년 3월	분고다카타시 종합계획 책정
2001년도	오이타현 지역상업 매력 향상 종합 지원 사업 실시
2005년 7월	지역재생계획 인정(내각부)
2007년 5월	중심시가지활성화계획 인정(내각부)

5) 쇼와시대는 일본의 시대 구분의 하나이며, 쇼와 천황의 재위 기간인 1926년 12월 25일부터 1989년 1월 7일  
까지를 말함

### 3. 재생사업의 추진 목적

이 시의 재생사업은 쇼와(昭和) 30년대(1950년대)시대의 거리, 시설, 역사 및 경관 정비, 복원하는 즉, 「쇼와의 거리 만들기(昭和の町づくり)」가 근본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쇼와의 거리 만들기(昭和の町づくり)」란 침체되고 쇠퇴된 옛 중심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1950년대의 풍취를 테마로 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 ① 쇼와의 建築재생 : 쇼와의 정취를 가진 가로 경관 만들기
- ② 쇼와의 歴史재생 : 마을과 점포의 옛 이야기 만들기
- ③ 쇼와의 商品재생 : 점포의 독자적인 상품 및 특산품 만들기
- ④ 쇼와의 商人재생 : 방문객과의 상인들과의 정감 있는 교류 만들기

이러한 「쇼와의 거리 만들기(昭和の町づくり)」사업은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매력 있는 상점가를 창조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점가로서의 기능도 충실히 하여 지역주민들도 찾아오게끔 하는 전략도 숨어 있다. 즉 상업과 관광, 두 가지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의 재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04년에 이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 수는 약 110만 명이었으나 이 재생사업을 통해 2014년에는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며 관광객의 소비액도 2004년의 약 18억 엔에서 2014년에는 64억 엔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 4. 재생사업 내용

##### 가. 쇼와의 거리 정비 사업

- 쇼와의 건축재생

- 사업명 : 「오이타현지역상업매력향상종합지원사업」, 「오이타현빛나는지역창출사업(명소육성사업)」
- 실시주체 : 분고다카타시
- 실시기간 : 2001년~2005년
- 실시대상 : 재래시장 내 34점포
- 사업내용 : 전통적 건축양식 복원, 간판 정비 등



〈사진4-1〉 쇼와시대 風으로 간판 정비

- 쇼와의 역사재생

- 사업명 : 「분고다카타시점포전시시설정비사업」
- 실시주체 : 분고다카타시상공회의소
- 실시기간 : 2001년~2005년
- 실시대상 : 재래시장 내 26점포
- 사업내용 : 옛 도구 및 옛 생활용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정비



〈사진4-2〉 쇼와시대 생활상 전시

- 쇼와의 상품재생

- 실시주체 : 재래시장 내 각 점포
- 실시기간 : 2001년~현재
- 사업내용 : 각각의 점포의 독자적인 상품 및 특산품 만들기



〈사진4-3〉 쇼와시대의 상품 전시

- 쇼와의 상인재생

- 실시주체 : 재래시장 내 각 점포
- 실시기간 : 2001년~현재
- 사업내용 : 방문객과 상인들과의 정감 있는 교류 형성

#### 나. 쇼와의 거점시설 활용 및 정비

오늘날 다행히도 분고다카타시의 중심상점가(재래시장)에는 1950, 60년대의 전통적인 건축물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약 70%). 이러한 건축물들은 분고다카타시의 지역재생사업의 핵심인 쇼와의 거리를 창출하는데 있어 그 무엇보다 큰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집객시설, 교류시설로서의 정비, 활용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중심상점가에 인접해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개인소유의 쌀 보관창고를 ‘쇼와로망장(昭和ロマン蔵)’으로 정비하여 그 내부에 ‘추억의 장난감 박물관’, ‘쇼와의 그림동화책 미술관’을 개설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의 食材만을 사용하는 ‘향토레스토랑’ 및 ‘쇼와의 생활체험관’ 등을 개설하는 등 쇼와의 거점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심상점가에 남아 있는 옛 은행 건축물도 정비, 활용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건축물의 소유가 민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비 수법에 있어서는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다음에 설명하는 ‘분고다카타시 관광지역만들기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사진4-3〉 쇼와 로망장

#### 다. 쇼와의 거리 주변 환경 정비

쇼와의 거리를 더욱 더 매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전통적인 건축물, 거리의 재현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환경정비도 빼 놓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 주차장, 공중화장실, 안내판 등도 쇼와의 거리 이미지에 맞게끔 정비하였다.

또한 중심상점가를 둘러싸고 흐르는 하천도 정비하여 한층 더 쇼와의 거리 매력을 향상시켰다.

#### 라. 쇼와의 거리 관리·운영 주체 만들기

분고다카타시,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지역기업, 지역주민들이 출자하여 만든 제3섹터 형식의 회사로서 분고다카타시의 지역재생의 핵심인 관광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업무로서는 지역관광진흥, ‘쇼와의 거리’ 진흥, ‘쇼와로망장(박물관, 미술관, 레스토랑)’ 운영 등을 맡고 있다.

- 회사명 : 분고다카타시 관광지역만들기 주식회사
- 설립 : 2005년 11월
- 자본금 : 95백만 엔
  - 분고다카타시 : 50백만 엔
  - 분고다카타시 상공회의소 : 5백만 엔
  - 금융기관 : 20백만 원
  - 일반(기업, 개인) : 20백만 원
- 종업원 : 3명

#### 마. 지역고용의 창출

쇼와의 거리가 만들어 짐에 따라 중심시가지 활성화는 물론 이 곳을 찾아오는 관광객, 지역주민이 급증하였다. 급증하는 방문객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쇼와의 거리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다양한 인 재확보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새로운 지역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재생사업의 지

원프로그램의 하나인 「지역제안형고용창조촉진사업(후생노동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찌쓰꾸리(まちづくり : 지역만들기)회사, 빈 점포에 신규참여 등 새로운 지역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 5. 재생사업을 위한 지원책

### 가. 지역제안형고용창조촉진사업(후생노동성)

- 추진주체 : 쇼와의 거리 관광재생협의회
- 설립년도 : 2005년
- 협의회 구성단체 : 분고다카타시, 상공회의소, 상점가연합회, 공업연합회, 관광협회, 농업협동조합, 집락영농연락협의회, 실버인재센터, 일본경제연구소, 민간기업, 금융기관
- 사업기간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 주요 지원 사업
  - 지역인재육성사업 : 지역구직자 양성 연수, 빈 점포 창업자 육성, 직업기술 연수
  - 인재유치사업 : 쇼와의 거리 운영,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 유치
  - 컨설팅지원사업 : 조직운영 매니저 초청사업, 지역만들기 전문가 초청 강연

### 나.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저리융자 등(경제산업성)

-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
  - 지역재생계획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사업자(관광거리만들기 주식회사)
  - 쇼와의 거리 집객시설, 교류시설, 숙박시설 등을 정비, 운영, 관리하는 사업자
  - 지역재생사업과 연계되는 관광사업자, 교통사업자
-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업
  - 지역재생기본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
  - 지역고용개발촉진 사업
  - 지역만들기 사업
  - 지역사회자본정비 사업

## 6. 지역재생사업의 성과

분고다카타시의 지역재생사업의 성과로서는 우선 중심상점가(쇼와의 거리)에 찾아오는 방문객(관광객, 지역주민)이 급증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업 당초의 목표치를 보면 2014년에 연간 200만 명을 설정해 놓았지만 그 목표는 이미 2007년에 달성하였다(약 360만 명).

또한 2004년에 분고다카타시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심상점가의 연간판매액이 2004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2001년부터 시작된 지역재생사업이 실제적으로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중심상점가 연간판매액 : 521백만 엔(2002년) ⇒ 615백만 엔(2004년)

게다가 중심상점가의 점포수도 요식업을 중심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더불어 종업원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중심상점가 점포수 : 132점포(2002년) ⇒ 136점포(2004년)
- 중심상점가 종업원수 : 587명(2002년) ⇒ 598명(2004년)

## 7. 성공요인 및 시사점

- 다양한 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에 특화시킨 지역재생
- 현 시대의 3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근대의 역사와 문화의 보전, 재현에 착목하였다는 점에서 가족단위의 방문객(관광객)을 자연스럽게 유치할 수 있었음
- 최근 일본의 전국적인 붐의 하나인 ‘쇼와의 붐<sup>6)</sup>’ 과 시기적 일치
-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적 건축물 및 가로 등 지역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 가치와 개성을 창출
- 단순한 관광시설의 조성이 아닌, 지역주민의 생활문화를 철저히 반영한 ‘생기 넘치는 상점가’ 복원
- 지역주민, 상공회의소, 행정기관, 외부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동체제 下의 ‘協同형 지역만들기’ 구현
- 市 독자적인 보조금제도 창설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 지역금융기관(신용금고)의 지원
- 지역재생사업에 관여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담보 융자 실시

---

6) ‘쇼와의 붐’ 이란, 쇼와시대의 전반기(1930대~60년)의 문화와 생활양식, 전통 등에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의미

## 제2절 사례분석(2) 구마모토현 아라오시(熊本縣荒尾市)

### 1. 아라오시의 개요

아라오시는 일본 큐슈(九州)지방의 구마모토현 북서쪽에 위치한 전형적인 지방소도시이다. 2007년 12월 현재 인구는 약 5만 6천명이며 시 전체 면적은 57.1km<sup>2</sup>이다. 상공업, 농수산업이 주요 산업이며 재정력지수는 0.44이다.

〈표4-3〉 아라오시의 개요

인구(명)	세대수(세대)	고령화율(%)	총면적(km <sup>2</sup> )	재정력지수	취업률(%)
55,960	20,176	26.8	57.1	0.44	92.8

### 2. 재생사업의 추진 배경 및 경위

아라오시는 예부터 일본 유수의 탄광지역으로 광대한 구릉지에 탄광촌이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1997년부터 제법 규모가 큰 탄광들이 폐광됨에 따라 탄광촌이 쇠퇴하면서 산업의 정체가 계속되는 등 지역 전체의 활기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산업 부활을 목표로 ‘食’을 중심으로 한 지역재생을 추진하고자 2002년에 시의 산업진흥부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팀을 결성하여 지역자원조사, 관계단체 인터뷰조사, 선진지 시찰 등을 통해 지역의 정보, 인재, 기술, 자금을 총 결집한 内發형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구상하게 이르렀다.

그 후 2004년 6월(1차 인정), 2005년 7월(2차 인정)에 내각부로부터 지역재생계획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아라오시의 지역재생 담당은 건설경제부 농촌수산과에서 맡고 있다(직원 3명, 2008년 8월 현재).

### 3. 재생사업의 추진 목적

아라오시의 지역재생사업의 목적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생산품의 직매 및 지역특산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 내 자금(구매력) 순환 시스템 즉, 内發형 지역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産學住協働’의 공간을 창출, ② 연대조직(기업조합)을 설립하여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③ 지속적인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④ 큰 자본이 필요치 않으며 누구나 가능한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있다.

#### 4. 재생사업의 추진 내용

##### 가. 지역共生型 연대거점 구축(‘거리의 연구실’)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조직이 중심이 되어 농산물직판장 기능을 겸한 지역의 특색이 살아 있는 거점시설을 아라오시 내 3곳에 개설하였다. 이러한 지역공생형 거점시설을 ‘거리의 연구실’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판매수익의 일부는 지역 재생(활성화)사업에 쓰이고 있다.

##### 【‘거리의 연구실’ 1호 : 青研(아오켄)】

아라오시 중앙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거점시설로 지역 농가에서 출하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산물직판장 기능을 하며 최근에는 시설 내에 와인양조실(winery)을 설치하여 와인을 생산한다.

이 점포로부터 약 1Km 부근에 입지한 대형 쇼펍센터의 영향으로 생선(生鮮)식품 가게들이 거의 대부분 문을 닫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동차를 운전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노약자들의 생선식품 구입이 쉽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徒歩圏 점포를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 운영주체 : 기업조합 「中央青研企劃」
- 조합원수 : 5명
- 설립일 : 2005년 11월
- 자본금 : 50만 엔(약 500만원)
- 사업내용 : 농산물직판장 운영, 과일주 제조 판매, 지역활성화 기획
- 1일 매출액 : 약 10만 엔(약 100만원)



〈사진4-4〉 거리 연구실

##### 【‘거리의 연구실’ 2호 : ありあけの里(아리아케노사토)】

사용되고 있지 않았던 농협의 쌀 보관 창고를 활용한 거점시설로서, 농산물 및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조합원의 평균연령이 71세로 고령자의 고용 창출 및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운영주체 : ありあけの里조합
- 조합원수 : 35명

- 설립일 : 2006년 3월
- 사업내용 :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고령자 교류 이벤트
- 1일 매출액 : 약 10만 엔(약 100만원)

【 ‘거리의 연구실’ 3호 : にんじん畑(닌진바타케)】

아라오역 부근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거점시설로서, 특히 고령자의 취향에 맞는 가공식품(반찬류,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며 계절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도 기획, 추진하고 있다.

- 운영주체 : 기업조합 「にんじん畑」
- 조합원수 : 5명
- 설립일 : 2006년 5월
- 사업내용 :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가공식품 제조 판매

나. 커뮤니티레스토랑 조성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민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시설인 커뮤니티레스토랑을 2007년 4월에 개설하였다. 운영은 지역 주민(주부) 4명이 하고 있으며 지역 내 농가에서 재배된 제철야채를 주재료로 사용하면서 향토요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설은 수익성 보다는 지역주민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1일 평균 약 35,000엔(약 350,000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200백만 엔으로 아라오시가 1/2, 지역주민이 1/2 부담하였다.



〈사진4-5〉 커뮤니티레스토랑

다. 지역재생 프로젝트 상품 개발

후생노동성이 지원하는 지역고용창조촉진사업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회를 발족 지역 특산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인 특산품으로서는 지역브랜드 소주, 포도주, 주스, 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상품들은 지역주민, 행정공무원, 지역농가, 전문고등학교 학생, 지역매니저 등 다양한 지역주체의 협력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사진4-6〉 지역재생 프로젝트 상품

## 5. 재생사업을 위한 지원책

### 가. 지역재생매니저사업(총무성)

지역재생매니저사업이란 외부의 지역개발(계획) 전문가를 3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고용된 전문가는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주민, 공무원 등과 함께 지역재생(활성화)에 관한 활동을 한다.

- 지원내용 : 전문가(지역재생매니저)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지급
- 연간 1,500만 엔(국고 2/3, 시비 1/3), 3년간 보조

### 나. 지역고용창조촉진사업(후생노동성)

고용기회가 적은 지역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 하는 지역(자발고용창조지역)이 제안한 고용대책사업 가운데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것을 선정된 후 사업을 위탁하는 제도.

- 자발고용창조지역이란 ① 고용기회가 적은 지역(과거 3년간 또는 과거 1년간 유효구인배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② 자발적으로 지역의 고용창출에 노력하는 지역

- 연간 2,000만 엔(국고 100%), 3년간 보조
- 보조금은 지역 특산품 개발(소주, 포도주, 주스 등)을 위한 인건비 및 연구회 운영·관리비로 충당

### 다. 시민협동·지역공헌 프로그램(문부과학성)

- 사업주체 : 아리아케(有明)고등전문학교
- 아리아케고등전문학교)로부터 지역재생사업의 하나인 지역특산품(食가공품, 술)개발을 위탁
- 연간 2,000만 엔(국고 100%), 3년간 보조

7) 고등전문학교란 5년제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학교이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와 2년제 전문대학을 합쳐 놓은 형태라 볼 수 있다.

## 6. 성과

- 새로운 지역고용기회의 창출
  - 20여개의 점포가 새롭게 창업
  - 200여명 신규 고용 창출
  -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
- 지역커뮤니티활성화에 큰 도움
- 고령자 및 노약자를 배려한 생활편의 시설 구축
- 새롭고 다양한 지역 특산품 개발에 따른 지역 지명도 향상
- 농수산물직판장 및 지역특산품 판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연간 판매 수익 : 5,800만 엔(약 6억 원)

## 7. 시사점

- 지역매니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시사
  - 기본적으로 지역매니저는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지역주민, 행정 등의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의견을 수렴
  -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고 실천 가능한 사업을 도출
  - 지역매니저는 외부자로서 지역 내 주체들이 인식하지 못한 지역의 가치, 개선, 자원 등을 발견할 수 있음
- 사업 주체가 재정적, 인적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점포 등을 창업함으로써 실패의 확률을 낮춤
- 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보조율이 높은 지원책 및 규제완화조치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産學住協働’에 의한 협동형 지역재생(활성화) 추진
- 대규모 시설 및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지역에 잠재하고 있던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를 창출

## ◆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에는 약 5만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사회적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2.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 사회적 목적에 사용
3.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 의사결정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 등 이해관계자 참여도 등 민주적으로 결정

## ◆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커뮤니티비즈니스라는 말은 1994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제 영어이다. 그 뜻을 간단히 말하면 각 지역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것을 사업으로 만들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도하게 대기업에 의존하는 지역사회가 아니라 각 커뮤니티 비즈니스들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서 지역사회를 새롭게 창출해 나가자는 시민운동이자 시민기업이다.

즉,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비즈니스 수법에 의해 해결하면서 그 과정 속에 이익이 창출하면 그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 분야로서는 복지, 보건, 의료, 환경, 지역만들기 등이 있다.

(개념) 사회적 공익과 경제적인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참여주체들의 공동이익 실현을 사업 영역으로하는 비즈니스를 말함

(특징)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유연한 조직형태를 가지며 각종 지역사회 현안을 중심으로 사업 전개 (참여주체) 지역사회의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 비영리기관, 기업 등 다양한 주체 참여

(조직형태) 비영리법인, 유한회사 등의 독립적 형태 및 기업노조, 연구기관과의 연계한 형태 등 다양한 조직형태의 유연함

(기대효과) 참가주체의 경제적 이익과 같은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익을 높이는 간접적 효과까지 다양함

1. 지역 내의 고용창출 효과
2. 지역 내의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과 소비의 지역내 순환이 가능함
3. 지역의 특성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향상시킴
4. 상대적 저비용으로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
5. 개인의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 분담을 통해 참여 동기 부여와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킴

### 제3절 소결 - 일본의 지방소도시 재생사업의 特徵

#### 1. 定住環境 개선을 목적으로 한 지역재생사업이 過半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지방소도시의 지역재생계획서를 토대로 사업목적별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총 182건 가운데 약 53%에 해당하는 96건이 생활환경, 자연환경 등 생활정주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역재생 지원책을 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생활정주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교부금인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을 신청한 지역재생계획서가 전체의 6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일본의 지방소도시 재생사업은 하드적인 성격이 강한 도로정비, 우수처리시설(하수도, 집락배수 등)과 같은 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단지, 이것은 우리나라와 보다 훨씬 앞서 생활환경 인프라가 구축되었던 일본의 지방소도시가 이러한 시설들을 처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되어진 시설들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새로운 고용창출 및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의 활력 증진

상기에서 설명한 생활정주환경개선 다음으로 많이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향토산업과 같은 지역산업의 육성에 따른 새로운 지역고용기회 창출이라 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2004년부터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고용 및 소득 창출을 도모하여, 지방 중소도시지역의 활력을 재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부합하는 재정적 지원 및 운영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중복성과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과감한 교부금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
- 지역의 특정사업이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자체 혁신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3. 지역재생을 위한 다양하고 폭 넓은 지원 프로그램

지역재생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7대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53개 세부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또한 지역재생제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및 시너지효과

를 위해 지역재생사업과 병행 추진이 가능한 390여 시책을 책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은 시대적 흐름과 지역의 요청에 의해 폐지되거나 또는 새롭게 만들어 지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2008년 3월에 11개 지원책 신설, 9개 지원책 폐지).

#### **4. 지역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총괄 기구 설치**

내각부 내에 설치된 지역재생사업추진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지역재생계획서를 심사, 인정 및 평가 등을 총괄하며, 필요한 재원은 각 관계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교부금 일부(지역재생기반 강화교부금 등)를 추진본부의 예산으로 일원화하여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재생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5. 지역주체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및 명확한 역할 분담**

심층사례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느 지역에서도 지역재생사업은 지역주민(조직), 행정기관, 상점가, 기업, 전문가 등 지역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지역주체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투명한 프로세스 속에서 자주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 주체간의 신뢰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지역재생과 관련된 복잡한 이해관계도 어렵지 않게 합의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여기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한 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소도시 재생을 위한 基本方向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1. 결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窮極的 목적은 일본에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재생사업의 전체적인 개요 파악과 더불어 현재 實際的으로 추진되고 있는 先進 사례지역 분석 등을 통해 지역재생사업의 實體를 實證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소도시 재생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문제의식, 先行연구의 검토, 연구의 방법 등을 정리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일본의 지방소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재생사업의 추진배경, 추진목적, 추진주체, 추진체계, 추진현황 등 전체적인 사업 개요를 명확히 정리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지역재생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 지원의 3대 핵심과 7가지 지원프로그램, 53개 세부지원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정리해 놓았다. 제4장에서는 內閣部로부터 지역재생계획을 인정받고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선진 사례지역 두 곳을 선정하여 현지 조사를 통해 재생사업의 實體 및 特徵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소도시 재생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要所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물론 지방도시에서도 지역재생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방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을 구상, 추진 준비중에 있어 우리나라와 사회적, 문화적, 지형적으로 유사한 일본의 사례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리, 분석한 일본 지역재생사업의 추진체계와 각종 지원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2. 정책 제언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소도시 재생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지방소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고령화·과소화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고용 창출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방소도시의 경우도 일본과 시대적인 늦고 빠름은 있지만 인구의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해 지역경제의 쇠퇴가 멈춰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類似하다.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기업 유치와 젊은 경제 인력의 확보라는 명확한 해답은 있지만 지방소도시의 경우, 이것을 수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가지 대안으로써 고령자에 의한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4장에서 전술하였듯이 아라오시(荒尾市)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가 그 해결책의 하나라 볼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지역개발주체간의 協力體系 구축 및 力量強化를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일본의 지역재생사업 우수지역 사례조사를 통해서 示唆된바와 같이 재생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동력은 그 무엇보다도 재생사업에 관여된 지역개발주체들 간의 주도면밀한 협력체제와 각각의 지역개발주체들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소도시에서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주체들 간의 협력체제 구축, 즉 지역개발주체들의 명확한 참여 프로세스 규명, 또한 각 주체들의 역량강화가 요구되어진다. 특히 지방소도시일수록 다양한 지역개발주체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지역 행정공무원과 지역주민들 간의 협조체제가 우선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재생사업 추진시스템 및 지원체제의 마련이 요구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사업은 유사사업의 중복, 재원 지원의 비효율화 등 일본과 흡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 지역재생제도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현실에 맞게끔 새로운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 지역재생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경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운영주체 및 추진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지역재생사업의 운영주체는 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운영과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추진본부를 균형발전위원회에 설치하며, 전체적인 실무사업을 담당하는 추진실은 국토해양부에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다.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진본부 및 추진실의 권한을 최대한 부여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추진본부와 추진실은 전체적인 사업의 사업조정 기능 강화 및 예산 지원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또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주민조직(단체), 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지역재생추진협의회(가칭)’의 설치가 필요하며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재생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지방소도시에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基本方向을 제시하였지만, 일본의 제도를 전혀 檢證작업 없이 도입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 일본의 지역재생사업도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본 내에서도 贊反論이 있으며 제대로 된 정책인지 검증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맞게끔 재정립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권오혁·서충원, 2002 「중소도시의 부동산 개발과 도심지 재생 전략 -일본 나가하마시의 쿠로가베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제8호 한국도시연구소
- 김승희, 2008 「일본의 지방재생전략」 강원발전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제도 도입 방안 연구」 도시재생사업단, 2007 「일본의 도시재생-도시재생특별법을 중심으로-」
- 박재욱, 2006 「일본 오사카 대도시권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도시재생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6집 4호
- 박종철·이혁주·김향집, 2001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유형에 관한 연구 -355개 시정촌의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을 중심으로-한국지리개발학회지 제13권 제2호
- 윤상복, 2001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전략」,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임준홍·이정수, 2006 「중소도시 중심시가지 실태와 활성화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 정두용, 2005 「일본 오사카 도시재생사례를 통한 정책 시사점」 『도시문제 6월호』
- 都市計画用語研究会, 2004 「都市計画用語辞典」, ぎょうせい
- 地方都市研究会, 2004 「中心市街地再生と持続可能なまちづくり」, 学芸出版社
- 総務省統計局, 2007 「統計でみる市区町村のすがた」, 日本統計協会
- 内閣府地域再生事業推進室, 2007 「地域再生のために」
- 内閣府構造改革特区推進室, 地域再生推進室, 2007 「特区・地域再生成果事例集」
- 地域再生本部, 「地域再生計画(2005~2008)」, 地域再生本部Home-Page
- 地域再生本部, 「地域再生総合プログラム」, 地域再生本部Home-Page
- 森野美德, 2007 「都市再生の到達点と今後の課題」, SHINTOSHI Vol. 61
- 矢作弘, 2002 「ランドデザインなき都市再生」, 都市問題 제93권 제3호



## 부 록

부록자료1 연구대상지 기초통계자료

부록자료2 연구대상지 지역재생계획 분석표

부록자료3 지역재생법(번역본)



부록자료 1(연구대상지의 기초통계자료)

지역명	인구	65세이상인구	고령화비율	세대수	면적(km)
岡山県高梁市	38,799	12,862	33.15	15,325	547
岡山県笠岡市	57,272	16,154	28.21	20,244	136
岡山県美作市	32,479	10,933	33.66	11,608	429
岡山県新見市	36,073	11,859	32.88	12,393	793
岡山県井原市	45,104	12,961	28.74	14,922	243
岡山県瀬戸内市	39,081	10,017	25.63	13,363	126
岡山県総社市	66,584	13,768	20.68	22,740	212
京都府京丹後市	62,723	17,575	28.02	20,968	502
京都府宮津市	21,512	6,930	32.21	8,360	169
京都府綾部市	37,755	11,492	30.44	14,286	347
京都府舞鶴市	91,733	21,789	23.75	34,898	342
京都府亀岡市	93,996	15,824	16.83	32,455	225
高知県市万十市	37,917	10,249	27.03	15,360	633
徳島県阿南市	78,002	19,033	24.40	26,116	279
高知県土佐清水市	17,281	5,985	34.63	7,707	267
高知県香美市	30,257	9,329	30.83	12,411	538
群馬県館林市	79,454	15,219	19.15	28,903	61
群馬県沼田市	53,177	12,909	24.28	18,922	443
群馬県安中市	63,179	15,533	24.59	21,907	276
群馬県豊岡市	53,765	12,675	23.57	18,026	123
群馬県渋川市	87,469	20,271	23.18	29,257	240
群馬県みどり市	52,115	10,197	19.57	17,510	208
宮崎県小林市	41,150	10,936	26.58	15,819	474
宮城県角田市	33,199	8,203	24.71	10,277	148
宮城県栗原市	80,248	24,804	30.91	23,738	805
宮城県白石市	39,492	10,218	25.87	12,587	286
宮城県岩沼市	43,921	7,703	17.54	14,874	61
岐阜県山県市	30,316	6,679	22.03	9,470	222
岐阜県中津川市	84,080	21,229	25.25	27,522	676
埼玉県東松山市	91,302	14,998	16.43	33,675	65
埼玉県坂戸市	98,964	15,199	15.36	38,826	41
埼玉県行田市	88,815	16,505	18.58	30,242	67
奈良県宇陀市	37,183	9,670	26.01	11,686	248
大分県臼杵市	43,352	12,905	29.77	15,490	291
大分県宇佐市	60,809	17,591	28.93	22,890	439
大分県日田市	74,165	19,681	26.54	25,370	666
大分県佐伯市	80,279	23,106	28.78	30,678	903
大分県竹田市	26,534	10,080	37.99	10,110	478
大分県中津市	84,368	20,319	24.08	32,866	491
大分県豊後高田市	25,114	8,269	32.93	9,694	207
大阪府貝塚市	90,314	16,545	18.32	31,592	44
大阪府柏原市	77,034	13,050	16.94	29,284	25
島根県江津市	27,774	8,655	31.16	10,769	269
島根県浜田市	63,046	18,061	28.65	25,023	690
島根県雲南市	44,403	13,929	31.37	12,990	553
鹿児島県奄美市	49,617	11,684	23.55	20,792	306
鹿児島県垂水市	18,928	6,294	33.25	7,675	162
鹿児島県阿久根市	25,072	8,206	32.73	10,177	134
鹿児島県曽於市	42,287	13,914	32.90	17,417	390
兵庫県篠山市	45,245	11,974	26.46	14,960	378
兵庫県南あわじ市	52,283	14,058	26.89	17,044	229
兵庫県丹波市	70,810	18,715	26.43	22,404	493
兵庫県淡路市	49,078	14,488	29.52	17,329	184
兵庫県養父市	28,306	8,750	30.91	9,212	423
福島県須賀川市	80,364	16,074	20.00	24,726	280
福井県敦賀市	68,402	14,260	20.85	25,742	251
福井県大野市	37,840	10,415	27.52	11,230	872
福井県小浜市	32,182	8,373	26.02	11,136	233
福井県越前市	23,995	6,146	25.61	6,670	153
福井県鯖江市	66,831	13,697	20.49	20,177	85
富山県小矢部市	33,533	8,901	26.54	9,535	134

富山県永見市	54,495	15,015	27.55	16,392	230
富山県滑川市	34,002	7,498	22.05	11,052	55
北海道根室市	31,202	7,025	22.51	12,173	413
北海道富良野市	25,076	6,168	24.60	9,989	601
北海道富良野市2	25,076	6,168	24.60	9,989	601
北海道三笠市	11,927	4,569	38.31	5,422	303
北海道夕張市	13,001	5,160	39.69	6,275	763
北海道恵庭市	67,614	11,847	17.52	25,662	295
北海道滝川市	45,562	10,906	23.94	19,314	116
山口県萩市	57,990	18,307	31.57	23,093	699
山梨県甲斐市	74,062	11,327	15.29	27,626	72
山梨県韮崎市	33,801	6,867	20.32	11,456	144
山梨県南アルプス市	72,055	13,821	19.18	23,316	264
山梨県都留市	35,017	7,154	20.43	13,271	162
山梨県富士吉田市	52,572	10,529	20.03	17,381	122
山梨県北杜市	48,144	13,503	28.05	17,797	603
山梨県上野原市	28,986	6,638	22.90	10,262	171
山梨県笛吹市	71,190	15,086	21.19	24,795	0.55
山形県米沢市	93,178	21,976	23.58	33,314	549
山形県長井市	30,929	8,466	27.37	9,481	215
三重県亀山市	49,253	10,062	20.43	17,828	191
石川県輪島市	32,823	11,481	34.98	11,940	426
石川県輪島市	32,823	11,481	34.98	11,940	426
石川県七尾市	61,871	16,423	26.54	21,402	318
神奈川県三浦市	49,861	11,903	23.87	17,523	32
新潟県南魚沼市	63,329	15,699	24.79	19,000	585
新潟県糸魚川市	49,844	15,379	30.85	17,408	746
新潟県妙高市	37,831	10,383	27.45	11,975	446
新潟県小千谷市	39,956	10,388	26.00	12,395	155
新潟県阿賀野市	47,043	11,573	24.60	12,847	193
新潟県魚沼市	43,555	11,890	27.30	13,626	947
新潟県佐渡市	67,386	23,514	34.89	24,604	855
新潟県村上市	30,685	8,252	26.89	10,774	142
岩手県久慈市	39,141	9,290	23.73	14,262	623
岩手県宮古市	60,250	15,963	26.49	21,855	697
岩手県金石市	42,987	13,411	31.20	16,994	441
岩手県大船渡市	43,331	11,716	27.04	15,138	323
岩手県陸前高田市	24,709	7,528	30.47	7,807	232
岩手県北上市	94,321	19,274	20.43	33,623	438
岩手県八幡平市	31,079	9,064	29.16	9,892	862
愛媛県東温市	35,278	7,625	21.61	12,861	211
愛媛県西予市	44,948	15,421	34.31	12,861	211
愛媛県宇和島市	89,444	25,576	28.59	34,222	469
愛媛県伊予市	39,493	10,185	25.79	13,747	194
愛知県江南市	99,055	17,872	18.04	34,239	30
愛知県犬山市	74,294	14,404	19.39	26,045	75
愛知県尾張旭市	78,394	12,698	16.20	28,899	21
愛知県新城市	52,178	13,266	25.42	16,156	499
愛知県新城市	52,178	13,266	25.42	16,156	499
愛知県岩倉市	47,926	7,672	16.01	18,774	10
愛知県津島市	65,547	12,736	19.43	22,307	25
熊本県水俣市	29,120	8,694	29.86	11,363	163
熊本県阿蘇市	29,636	8,941	30.17	9,932	376
熊本県宇城市	63,089	16,088	25.50	20,643	189
熊本県荒尾市	55,960	14,996	26.80	20,176	57
茨城県結城市	52,460	10,369	19.77	16,589	66
茨城県那珂市	54,705	11,599	21.20	18,034	0.61
茨城県笠間市	81,497	17,028	20.89	26,960	240
茨城県北茨城市	49,645	11,439	23.04	17,090	187
茨城県常陸太田市	59,802	15,891	26.57	19,809	372
茨城県小美玉市	53,265	10,428	19.58	16,564	140
茨城県稲敷市	49,689	11,496	23.14	15,043	178
茨城県かすみがうら市	44,603	8,750	19.62	14,302	119

滋賀県高島市	53,950	13,517	25.05	17,302	511
長崎県大村市	88,040	16,032	18.21	31,849	126
長崎県島原市	50,045	13,369	26.71	17,170	83
長崎県松浦市	26,993	7,574	28.06	9,462	130
長崎県五島市	44,765	13,639	30.47	19,305	421
長崎県雲仙市	49,998	13,530	27.06	15,756	207
長野県駒ヶ根市	34,417	8,103	23.54	12,035	166
長野県大町市	32,145	8,567	26.65	11,240	565
長野県飯山市	24,960	7,273	29.14	7,802	202
長野県小諸市	45,499	10,368	22.79	16,251	99
長野県安曇野市	96,266	22,216	23.08	32,743	332
長野県塩尻市	68,346	14,145	20.70	24,860	290
長野県伊那市	71,788	17,449	24.31	25,043	668
長野県千曲市	64,022	15,284	23.87	21,251	120
長野県諏訪市	53,240	11,423	21.46	20,796	109
佐賀県武雄市	51,497	12,359	24.00	16,098	195
佐賀県鳥栖市	64,723	11,681	18.05	22,808	72
千葉県銚子市	75,020	19,404	25.87	26,812	84
千葉県山武市	59,024	13,003	22.03	19,086	146
千葉県袖ヶ浦市	59,108	9,620	16.28	19,834	95
千葉県印西市	60,060	7,668	12.77	19,670	54
秋田県能代市	62,858	18,396	29.27	23,138	427
秋田県大館市	82,504	23,816	28.87	28,406	914
秋田県大仙市	93,352	27,639	29.61	28,381	867
秋田県由利本荘市	89,555	24,197	27.02	28,564	1209
秋田県湯沢市	55,290	16,493	29.83	17,329	791
沖縄県宜野湾市	86,769	11,589	13.36	34,738	20
沖縄県名護市	59,469	9,365	15.75	22,201	210
和歌山県橋本市	68,529	14,061	20.52	22,860	130
和歌山県田辺市	82,499	20,829	25.25	32,643	1026
栃木県那須烏山市	31,152	8,113	26.04	9,680	174
栃木県栃木市	82,340	18,351	22.29	28,012	122
栃木県真岡市	66,362	10,770	16.23	22,130	112
広島県三次市	59,314	17,753	29.93	21,968	778
青森県十和田市	68,359	14,586	21.34	25,358	689
青森県五所川原市	62,181	15,553	25.01	22,067	405
青森県つがる市	40,091	11,038	27.53	11,508	254
静岡県菊川市	47,502	9,457	19.91	14,698	94
静岡県袋井市	82,991	14,291	17.22	28,340	109
静岡県島田市	96,078	21,423	22.30	30,592	195
静岡県湖西市	44,057	7,571	17.18	15,430	55
<b>평 균</b>	<b>54,253</b>	<b>13,021</b>	<b>24.00</b>	<b>18,899</b>	<b>321</b>



53	大分県日田市	황기산 도새생성	수원경관지, 지장산도원생성, 생활민공경선	수원경관지, 지장산도원생성, 생활민공경선, 교류인구증가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지장산도원
54	青森県十和田市	중심시가지재생	수원경관지, 수원생태경관, 교류인구증가	수원경관지, 수원생태경관, 교류인구증가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중심시가지, 수질환경
55	岩手県大田渡市	용모고 절기 용모 도시만들기	수원경관지, 수원생태경관	수원경관지, 수원생태경관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56	岩手県北上市	이름은 용모 도시만들기	수원경관지, 자연친화경관	수원경관지, 자연친화경관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57	岩手県久慈市	쾌적한 환경 도시만들기	수원경관지, 수원생태경관	수원경관지, 수원생태경관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수질개선
58	宮城県栗原市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59	山形県赤松市	이름은 용모 도시만들기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60	埼玉県東松山市	쾌적한 도시만들기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61	新潟県小千谷市	자연과 문화의 도시만들기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62	新潟県糸魚川市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자연친화경관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자연친화경관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자연친화경관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63	石川県輪島市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64	福井県敦賀市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65	福井県小浜市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66	福井県大野市	지역개발기반강화계획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67	山梨県富士吉田市	이름은 용모 도시만들기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68	山梨県都留市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69	長野県糸魚川市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70	岐阜県中津市	배우고 용모로 지역만들기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71	京都府京丹後市	시안에 의한 매력도시 만들기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72	滋賀県高島市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73	滋賀県高島市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74	兵庫県淡路市	자연과 절기, 살아있는 도시만들기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75	岡山県総社市	쾌적한 도시만들기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76	岡山県高梁市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77	岡山県新見市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78	愛媛県伊予市	인간과 물이 만나는 고품질도시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79	長崎県大村市	후쿠에이 물자를 지역만들기,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80	長崎県松浦市	지역을 활용한 지역축진 계획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81	大分県日田市	물과 신록이 넘치는 지역만들기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82	大分県佐伯市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83	大分県宇佐市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84	青森県十和田市	관광개발기반강화계획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85	秋田県能代市	신원생태경관계획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86	秋田県大館市	지역친화경관계획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87	岩手県大田渡市	자연친화경관계획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88	滋賀県高島市	고용창출프로젝트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89	高知県阿南市	지역친화경관계획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90	愛知県津島市	농산물 가공에 의한 고용창출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91	高知県土佐清水市	지역친화경관계획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92	大分県日田市	지역친화경관계획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93	熊本県宇城市	지역친화경관계획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94	大分県日田市	고용창출계획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95	鹿児島県垂水市	여러 니더미다시육성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96	沖縄県糸島市	지역친화경관계획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97	北海道支庁	지역친화경관계획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98	北海道釧路市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99	北海道釧路市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100	新潟県佐渡市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101	新潟県魚沼市	지역친화경관계획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102	長野県上田市	정류의 마을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103	長野県伊那市	인쇄출판 계획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104	愛媛県宇和島市	세계에 알려진 지역만들기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수원경관지, 생활민공경선, 관광개발, 농림생태화	지역개발기반강화교부금	생활민공, 원경보전



157	長野縣駒ヶ根市	수원정비계획	오수처리시설장비, 관공구조사, 경주연구회보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관공구설치사업, 정수시설사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원개선, 정수시설
158	長野縣塩尻市	인근, 문화, 정보의 마을	지역산업육성, 중심시기개발정책, 지역활성화	정보기술사업기, 인구소유지, 주간환경개선, 중심시기정비	일반정보특수지역개발기	지역산업, 중심시기
159	長野縣千曲市	공공과 교육의 계승계획	오수처리시설장비, 관광패키지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이면도로, 관광미화운동, 중앙입원정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원개선, 관광, 축제
160	長野縣安曇野市	이름다운 수변제상	오수처리시설장비, 도시외의 교류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도시민과의 교류사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원개선, 도시민교류
161	京都府綾部市	풍부한 자연의 지역만들기	오수처리시설장비, 하천정비사업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농업진흥특수사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원개선
162	京都府宮津市	예쁜수변제상계획	오수처리시설장비, 수질개선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원개선
163	岡山県井原市	깨끗한 지역만들기	오수처리시설장비, 수질개선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생활민생사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원개선
164	岡山県美作市	자연과 공하는 지역만들기	오수처리시설장비, 수질개선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중앙입원정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원개선
165	岡山県備前市	지역의 마을	오수처리시설장비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중앙입원정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원개선
166	岡山県瀬岡町	생활환경정착계획	오수처리시설장비, 관광패키지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관광미화운동, 중앙입원정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원개선, 관광, 중앙
167	岡山県和気市	역사를 살린 쾌적한 지역제상	오수처리시설장비, 관광패키지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관광미화운동, 중앙입원정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원개선, 관광, 중앙
168	三重縣龜山市	정류제상	오수처리시설장비, 관광패키지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중앙입원정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원개선
169	栃木縣那須烏山市	정류제상	오수처리시설장비, 관광패키지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중앙입원정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원개선, 관광미화운동
170	秋田県大仙市	정류제상	오수처리시설장비, 관광패키지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중앙입원정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원개선, 관광미화운동
171	宮城県白石市	정류제상	오수처리시설장비, 관광패키지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중앙입원정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원개선, 관광미화운동
172	岩手縣八幡平市	농 제상	오수처리시설장비, 중앙입원정책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중앙입원정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원개선, 관광미화운동
173	鹿嶋市鹿嶋會於市	정류제상	오수처리시설장비, 관광패키지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중앙입원정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원개선, 관광미화운동
174	青森縣十和田市	관광제상계획	관광패키지사업장비, 관광패키지	관광패키지사업장비, 관광패키지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관광
175	秋田県湯沢市	관광산업육성계획	고용확대, 관광산업진흥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관광패키지, 지역고용확대추진사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고용, 기업유지
176	埼玉縣川口市	민간기업육성	수민기업육성	민간기업육성사업, 민간중심사업	-	민간
177	愛知県豊橋市	신림사업장추진계획	신림사업장추진, 관광패키지, 온난화방지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인제육성사업, 바이오메스사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신림사업, 바이오메스
178	兵庫県丹波市	교류의 지역만들기	시민활동진흥정책, 자치활동진흥정책, 지역주민주체역량강화	시민활동진흥, 공공시설진흥	보조금대상시설유요활동	시민활동, 공공시설진흥
179	奈良縣宇陀市	농촌관광진흥	농림업진흥, 교류민간중심	관광미화운동, 관광패키지, 관광보존정비사업	보조금대상시설유요활동	관광, 농림업, 관광
180	岩手縣宮古市	수자원개발사업	수질개선정책, 관광패키지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질개선
181	栃木縣那須市	수자원개발사업	수처리시설장비, 수질개선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질개선
182	新潟縣魚沼市	지역, 사업, 산업이라는 지역	오수처리시설장비, 수질개선, 관광패키지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질개선
183	大阪府柏原市	수자원개발사업	수처리시설장비, 관광패키지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질개선
184	島根県江津市	이름다운 지역만들기	수질개선정책, 관광패키지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질개선
185	高知県香美市	활기찬 지역만들기	수질개선정책, 관광패키지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관광미화운동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수질개선, 관광미화운동
186	大分県佐伯市	폐교활용	복지시설장비, 고용확대	농업진흥특수사업, 공공하수도사업, 정화조설치사업, 관광미화운동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폐교활용, 고용
187	兵庫県篠山市	민간기업육성지역특화사업	노동교류촉진, 커뮤니티제상 및 활성화	지역개발기반공회교부금, 민간기업육성사업, 민간중심사업	보조금대상시설유요활동	민간기업, 커뮤니티



## 부록자료 3

### 지역재생법

2005년 4월 1일 법률 제25호

2007년 3월 31일 법률 제15호 (일부 개정)

#### <제1장 총칙>

#####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최근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체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자주적, 자립적인 추진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고용기회 창출 등 지역의 활력 재생(이하 「지역재생」이라 함)을 종합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기본이념, 정부에 의한 지역재생기본방침의 책정,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지역재생계획의 작성 및 내각부총리대신에 의한 인정, 당해 인정을 받은 지역재생계획에 기초한 사업에 대한 특별 조치와 더불어 지역재생본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여 개성이 풍부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실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이념)

제2조 지역재생의 추진은 지역의 창의력을 최대한 살려 윤택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창조, 지역주민이 지역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지역의 지리적 및 자연적 특성, 문화적 자산, 다양한 인재의 창조력을 최대한 활용한 사업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 의해 매력 있는 취업을 창출하는 것과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제기반의 강화와 쾌적하고 매력 있는 생활환경의 정비를 종합적,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국가의 책임)

제3조 국가는 앞 조항에 규정한 기념이념을 바탕으로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존중하면서, 지역재생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 실시하는 책임을 가진다.

## <제2장 지역재생기본방침>

제4조 중앙정부는 지역재생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이하 「지역재생기본방침」이라 함)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지역재생기본방침에는 아래의 사항을 정한다.

- 1) 지역재생의 의의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지역재생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여야 하는 시책에 관한 기본적 방침
- 3) 다음 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역재생계획의 동조 제6항의 인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
- 4) 지역재생의 추진에 필요한 그 외 필요한 사항

3. 내각부총리대신은 지역재생본부가 작성한 지역재생기본방침의 안에 대해 閣議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4. 내각부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閣議의 결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지역재생기본방침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중앙정부는 정세의 추이에 따라 변경의 필요가 생길 시에는 지역재생기본방침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지역재생기본방침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 <제3장 지역재생계획의 인정 등>

### (지역재생계획의 인정)

제5조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시정촌(특별구 포함) 또는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제67호) 제284조 제1항의 일부 사무조합 또는 광역연합을 말하며, 향만법(1950년 법률 제218호)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무국 포함. 이하 같음)는 지역재생기본방침에 의거, 내각부령에 의해 지역재생을 추진하고 하는 계획(이하 「지역재생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지역재생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 지역재생계획의 구획
- 2) 지역재생계획의 목표
- 3) 전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 4) 계획 기간
- 5) 기타 내각부령으로 정해진 사항
- 6) 그 외 지역재생계획의 실시에 대해 당해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전항 제3호의 사항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 1) 지역 고용기회의 창출과 기타 지역재생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내각

부령에 정해진 사업에 관련된 주식회사가 행하는 사항

2) 지역의 고령자, 장애자, 기타 취업이 곤란한 자(제14조 「고년연자 등」 이라 함)를 고용하는 것을 통해 당해 지역에 있어서 고용기회의 창출, 기타 지역재생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내각부령에 정해진 사업에 관련된 회사가 행하는 사항

3) 지역의 고령자, 장애자, 안정한 직업에 취업이 곤란한 청년,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휴업 또는 퇴직한 여성, 그 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효하게 능력을 발휘하기가 곤란한 자에 대해 취업모집방법의 개선, 범위의 확대, 고용형태의 개선 등을 행하는 사업주 또는 지역에 있어 이러한 자에 대해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곤란한 상황 개선을 위해 조언, 원조를 행하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에 대해서 조성을 행하는 사업 가운데 해당지역의 고용기회 창출 및 지역재생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내각부령에서 정한 사업

4) 지역의 경제기반 강화 및 생활환경 정비를 행하는 다음에 기재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① 지역 교통의 원활화 및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행하진 도로, 농도, 임도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

②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행하는 하수도, 집락배수시설, 정화조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

③ 지역의 해상운송 및 수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행하는 항만시설, 어항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

5) 지역의 복지, 문화 등 지역재생을 위한 사업 활동의 기반을 충실하기 위한 보조금등 교부재산을 해당보조금등교부재산에 충당한 보조금 등의 교부 목적이외의 목적에 사용, 양도, 교환, 차용, 담보에 의해 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공공단체는 지역재생계획을 작성할 때, 제12조 제1항에 의해 조직된 지역재생협의회와 지역재생계획에 기재하는 사항에 관해서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재생협의회와 협의를 할 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신청서에 협의개요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역재생계획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할 수 있다.

1) 지역재생기본방침에 적합한 계획

2) 지역재생계획의 실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생(활성화)의 실현이 충분히 가능한 계획

3) 원활하고 확실한 전망이 있는 계획

7.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인정을 행할 시 필요할 경우 지역재생본부에 대해 의견을 구할 수 있다.

8. 내각총리대신은 지역재생계획 제3항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6항에 의해 인정하고자 할 시 해당사항에 관련된 관련 행정기관장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9. 내각총리대신은 제6항에 의해 인정하고자 할 시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인정에 관한 처리 기간)

제6조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 신청을 수리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조 제6항의 인정에 관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이 전항의 처리기간 중에 전조 제6항의 인정에 관한 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동조 제8항의 동의에 관해 동의 또는 불 동의를 결정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인정지역재생계획의 변경)

제7조 지방공공단체는 제5조 제6조에 의해 인정을 받은 지역재생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시,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 제5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인정지역재생계획의 변경에 준용한다.

### (보고의 징수)

제8조 내각총리대신은 제5조 제6항의 인정을 받은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인정지역재생계획의 실시 상황에 대해 보고를 구할 수 있다.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정지역재생계획에 제5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 인정지방공공단체에 대해 동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실시 상황에 대해 보고를 구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 (조치의 요구)

제9조 내각총리대신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정지역재생계획의 제5조 제3항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된 경우, 동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의 적절한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인정지방공공단체에 대해 해당 사업의 실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인정의 취소)

제10조 내각총리대신은 인정지역재생계획이 제5조 제6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해당 인정지역재생계획에 동조 제3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시, 내각총리대신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단체장은 동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의 취소에 관해 내각총리대신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3.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이외, 관계행정기관장은 인정지역재생계획에 제5조 제3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 취소에 관해 내각총리대신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4. 제5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 취소에 관해 준용한다.

### (인정지방공공단체의 지원 등)

제11조 인정지방공공단체는 지역재생본부에 대해 인정지역재생계획의 실시를 통해 얻어지는 지견을 기초로 해당인정지역재생계획의 원활하고 확실한 실시 촉진을 위해 정부의 지역재생에 관한 시책의 개선에 관한 제안이 가능하다.

2. 지역재생본부는 전항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인정지방공공단체에 통지함과 동시에 인터넷 및 그 외 적절한 방법에 의해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국가는 인정지방공공단체에 대해 해당인정지역재생계획의 원활하고 확실한 실시에 관한 필요한 정보 제공, 조언, 그 외 원조를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전3항에 정해진 것 이외에 국가 및 인정지방공공단체는 해당인정지역재생계획의 원활하고 확실한 실시가 촉진될 수 있도록 상호 연대하면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4장 지역재생협의회>

제12조 지방공공단체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하는 지역재생계획, 인정지역재생계획 및 그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 그 외 지역재생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재생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다음의 주체로 구성한다.

1) 전항의 지방공공단체

2) 제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실시하고자 하는 자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의회를 조직하는 지방공공단체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전항 각호 이외의 자를 협의회에 구성원으로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1) 해당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하고자 하는 지역재생계획 또는 인정지역재생계획 및 그 실시에 관해 밀접히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2) 그 외 해당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지방공공단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협의회의 구성원을 추가할 때는 협의회의 구성원의 구성이 해당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하고자 하는 지역재생계획 또는 인정지역재생계획 및 그 실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제1항의 협의를 행하기 위한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에 관해서는 협의회의 구성원은 그 협의 결과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전 각항에 정해진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 <제5장 인정지역재생계획을 기초로 한 사업에 대한 특별 조치>

### 제1절 주식의 취득에 관한 과세의 특례

제13조 인정지역재생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제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주식회사로 지역고용기회 창출에 대한 기여정도를 고려하여 내각부령에 정하는 상근고용 종업원의 수, 기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자에 의해 발행되어지는 주식을 지불하는 것에 의해 개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별조치법에 의거한 과세의 특례를 적용한다.

2. 내각총리대신은 특정지역재생사업회사가 전항에 규정하는 내각부령에 정해진 요건에 미흡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특정지역재생사업회사의 지정 및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내각부령으로 정한다.

### 제2절 특정지역고용회사에 대한 기부에 관한 과세의 특례

#### (과세의 특례)

제14조 인정지역재생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제5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회사로서 지역고용기회 창출에 대한 기여정도 및 해당사업의 적절한 실시 확보를 고려해서 내각부령에 정해진 상근 고용하는 고령자 등의 수, 그 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지방공공단체가 규정하는 자에 대해 법인이 해당지정에 관한 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전에 한함)를 했을 경우 해당기부에 관해 다음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확인되면 조세특별조치법에 의거 해당법인에 대해 법인세의 과세에 대해 損金算入의 특례를 적용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해당지정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 특정지역고용회사가 상근고용을 해야 하는 고령자수와 기타 내각부령에서 정한 고용에 관한 조치 및 동항의 특례 적용을 받는 기부의 총액으로서 해당 고령자수에 따라서 내각부령이 정한 산정액을 명확히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유효기간은 해당지정일로부터 산정해서 2년으로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및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를 제외한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1항의 인정지역재생계획의 인정이 제외될 때 그 효력은 상실 한다.

5. 인정지방공공단체는 특정지역고용회사가 제1항에 규정하는 내각부령에 의해 정해진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할 때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6. 인정지방공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할 때는 그 취지를 고령자등고용확보조치 및 특례대상총액, 해당지역의 유효기간을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의 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7. 특정지역고용회사의 지정 및 그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은 내각부령으로 정한다.

### **(기부의 보고 등)**

제15조 특정지역고용회사는 법인으로부터 전조 제1항의 기부를 받을 경우는 내각부령으로 정한 것에 의해 해당기부를 한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기부금 총액, 연월일이 기재된 보고서를 내각부령으로 정해진 서면을 첨부하여 인정지방공공단체장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인정지방공공단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어진 보고서 또는 첨부해야 할 사항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해당보고서를 제출했던 특정지역고용회사에 대해서 설명 요구 또는 보고서 수정을 명할 수 있다.

3. 인정지방공공단체장은 보고서 등에 의해 기부의 특례대상총액 및 기타 사항에 대해 내각부령에 의해 정해진 요건을 확인하였을 때는 해당 보고서를 제출한 특정지역고용회사에 대해 그 취지를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특정지역고용회사의 의무)**

제16조 특정지역고용회사는 제14조 제1항의 기부를 받았을 때, 해당기부에 관한 금전을 그 지정에 관한 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특정지역고용회사는 내각부령에 의해 정해진 사업 실시 상황을 해당 지방공공단체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개선명령)**

제17조 인정지방공공단체장은 특정지역고용회사가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내각부령으로 정한 요건에 미흡할 경우와 그 사업 내용이 고령자등고용확보조치의 내용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해당특정지역고용회사에 대해 그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보고 및 검사)**

제18조 인정지방공공단체장은 특정지역고용회사의 지정에 관한 사업의 적정한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특정지역고용회사에 대해 보고를 하게끔 하거나 해당특정지역고용회사의 사무소, 사업장에 들어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그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조사의 권한은 범죄조사를 위해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제3절 특정지역고용등촉진법인에 대한 기부 등에 관한 과세의 특례 (과세의 특례)

제19조 인정지역재생계획에 기재된 제5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지역고용기회의 창출에 대한 기여정도 및 해당사업의 적절한 실시 확보를 고려해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할 경우 인정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 개인 또는 법인이 금전에 의해 기부, 증여하였을 경우, 조세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의 과세에 대해 기부금공제 등의 특례를 적용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그 유효기간이 완료되었을 경우 및 다음의 규정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외에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1항의 인정지역재생계획의 인정이 취소되었을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인정지방공공단체는 특정지역고용등촉진법인이 제1항에 규정하는 내각부령이 정한 요건에 미흡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인정지방공공단체장은 특정지역고용등촉진법인이 제1항에 규정하는 내각부령이 정한 요건에 충족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6. 인정지방공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유효기간, 그리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그 취지를 지체 없이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7. 특정지역고용등촉진법인의 지정 및 그 취소 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내각부령을 정한다.

### (특정지역고용등촉진법인의 보고의무)

제20조 특정지역고용등촉진법인은 내각부령에 의거 그 지정에 관한 사업의 실시 상황을 인정지방공공단체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4절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의 교부 등

제21조 국가는 인정지방공공단체에 대해 해당인정지방공공단체의 인정지역재생계획에 제5조 제3항 제4호의 사항이 기재된 경우, 동호①, ②, ③에 규정하는 사업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전항의 교부금(이하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이라 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며 정해진 시설의 정비에 사용될 수 있다.

- 1) 도로교부금은 도로, 농로, 임도로서 정령에서 정해진 시설
- 2) 오수처리기반정비교부금은 하수도, 집락배수시설, 정화조 등으로 정령에서 정해진 시설
- 3) 항정비교부금은 항만시설, 어항시설로서 정령에서 정해진 시설
3.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을 사용하여 시설의 정비를 요구하는 시설에 관해서는 도로법, 토지개

량법, 기타 법령을 기초로 국가 부담 또는 보조는 당해 규정에 상관없이 교부하지 않는다.

4.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의 교부 의무는 교부금의 종류에 대응하여 정령으로 정해진 구분에 따라 농림수산대신, 국토교통대신, 환경대신이 행한다.

### **제5절 재산처분의 제한에 관한 승인의 절차 특례**

제22조 인정지방공공단체가 인정지역재생계획을 바탕으로 제5조 제3항 제5호에 규정 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인정지방공공단체가 그 인정을 받은 것으로 하여 보조금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하는 각성청의 장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장 지역재생본부>**

### **(설치)**

제23조 지역재생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지역재생본부를 설치한다.

### **(소장사무)**

제24조 본부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지역재생기본방침안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인정 신청을 한 지역재생계획의 의견(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의견을 의미함)관한 사무
3. 인정지역재생계획의 원활, 확실한 실시를 위해 시책의 종합조정 및 지원조치 추진에 관한 사무
4. 전2호 이외의 지역재생기본방침에 기초한 시책 실시 추진에 관한 사무
5. 전 각호 이외의 지역재생에 관한 시책 가운데 중요한 기획 및 입안 등을 종합 조정하는 사무

### **(조직)**

제25조 본부는 지역재생본부장, 지역재생부본부장 및 지역재생본부원으로 조직이 구성된다.

### **(지역재생본부장)**

제26조 본부의 장을 지역재생본부장이라하며 내각총리대신이 그 임무를 행한다.

2. 본부장은 본부의 사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지역재생부본부장)**

제27조 본부에 지역재생본부부장을 두며 국무대신이 그 임무를 행한다.

2. 부분부장은 본부장의 직무를 도와준다.

#### (지역재생본부원)

제28조 본부에 지역재생본부원을 둔다.

2. 본부원은 본부장 및 부분부장이외의 모든 국무대신이 그 임무를 행한다.

#### (자료제출 및 기타 협력)

제29조 본부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설명, 기타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2. 본부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항의 규정된 자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협력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하다.

#### (사무)

제30조 본부에 관한 사무는 내각관방에서 처리하고 명을 받은 내각관방부장관보가 掌理한다.

#### (주임 대신)

제31조 본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각법(1947년 법률제5호)에서 말하는 주임의 대신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한다.

#### (명령에 위임)

제32조 이 법률에 정한 사항이외의 본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명령에서 정한다.

### <제7장 벌칙>

제33조 다음의 각호 어디에도 해당되는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서 보고서 또는 첨부필요로 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의 보고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요구 받은 설명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설명, 또한 동항의 규정에 의해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서 등의 정정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정정한 자

3.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고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로 답변한 자

제34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그 법인의 의무에 관해 전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도 동조의 벌금형을 처한다.

## 부칙

1 (략)

(검토)

2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7년 이내에 이 법률의 시행 상황에 관해 검토를 더해 그 결과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부칙(2007년 3월 31일 법률 제15호) (략)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충남발전연구원 유학열 책임연구원

기본연구 2008-10 · 일본 지역재생사업의 실태 및 특징

글쓴이 · 유학열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8년 12월 31일 / 발행 · 2008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165(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050-5 03910

<http://www.cdi.re.kr>

©2008.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